

제137회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11 호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87년10월30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1.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2.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3.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
4. 범죄피해자구조법안
5. 혼인에관한특례법안(대안)
6.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7.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8.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9.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10. 자금관리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
11. 물품관리법 개정법률안
12. 해양개발기본법안
13. 소프트웨어개발촉진에관한법률안
14.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15.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16. 도서관법 개정법률안
17.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안
18. 청소년육성법안(대안)
19. 전통사찰보존법안
20.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21.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안
22. 의료기사법 중 개정법률안
23.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안
24.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
25.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26.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27. 대한적십자사조직법 개정법률안
28.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중 개정법률안
29. 남녀고용평등법안
30.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31.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32.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33.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34.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35. 노사협의회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36.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안
37.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안
38.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39. 대통령선거법안
40.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법률안
41.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42. 광주직할시와전라남도의관할구역변경및송정시·광산군폐지에관한법률안
43.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44.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
45. 198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6. 1988년도 예산안
47. 국제투자보증기구설립협약 비준동의안
48.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개정의정서 체결에 대한 동의안
49.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50. 1988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51. 1988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52. 1988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
53. 1988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54. 1988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55. 1988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
56. 1988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57. 1988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58. 1988년도발행 환경관리공단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59. 1988년도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60. 1988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현경대 의원 외 29인 발의)	4
2.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3.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4. 범죄피해자구조법안(현경대·임두빈 의원 외 32인 발의)	5
5. 혼인에관한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나석호 제출)	6
6.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7.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8.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9.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10. 자금관리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11. 물품관리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12. 해양개발기본법안(이상희·김현욱·류홍수·정현경 의원 외 49인 발의)	11
13. 소프트웨어개발촉진에관한법률안(박종문·이진·김문기 의원 외 37인 발의)	12
14.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15.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

16. 도서관법 개정법률안(김현자·조상현·조일문·진치범·김형효·한양순·박성태·홍중욱 의원 외 30인 발의)	12
17.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안(이중찬·최창규·김영정·홍중욱·조일문·김형효·남재희·조남조 의원 외 57인 발의)	12
18. 청소년육성법안(대안)(문교공보위원장 이영일 제출)	13
19. 전통사찰보존법안(김집·홍중욱 의원 외 25인 발의)	13
20.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조상현 의원 외 37인 발의)	13
21.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안(정부 제출)	14
22. 의료기사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23.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안(정부 제출)	15
24.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25.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박성태·김집 의원 외 25인 발의)	16
26.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박성태·김집 의원 외 24인 발의)	16
27. 대한적십자사조직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28.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29. 남녀고용평등법안(김영정·김장숙 의원 외 44인 발의)	18
30.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
31.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
32.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보건사회위원장 박준병 제출)	20
33.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보건사회위원장 박준병 제출)	21
34.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보건사회위원장 박준병 제출)	21
35. 노사협의회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보건사회위원장 박준병 제출)	22
36.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안(이상희·심명보·이중찬·우병규·정선호·김두중 의원 외 36인 발의)	23
37.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안(이상희·강경식(민주정의당)·정동성·徐廷和·이성열·조경목·진치범 의원 외 40인 발의)	23
38.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이대순 제출)	24
39. 대통령선거법안(내무위원장 전병우 제출)	25
40.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법률안(내무위원장 전병우 제출)	29
41.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내무위원장 전병우 제출)	30
42. 광주직할시와전라남도의관할구역변경및송정시·광산군폐지에관한법률안(고귀남·이영일 의원 외 61인 발의)	31
43.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1
44.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	32
45. 198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2
46. 1988년도 예산안	34
47. 국제투자보증기구설립협약 비준동의안(정부 제출)	41
48.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개정의정서 체결에 대한 동의안(정부 제출)	42
49.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정부 제출)	43
50. 1988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정부 제출)	44
51. 1988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정부 제출)	44
52. 1988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정부 제출)	44
53. 1988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정부 제출)	44
54. 1988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정부 제출)	44

55. 1988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정부 제출)	44
56. 1988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제출)	45
57. 1988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제출)	45
58. 1988년도발행 환경관리공단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제출)	45
59. 1988년도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제출)	45
60. 1988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정부 제출)	47
61. 휴회의 건(의장 제의)	47
62.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의 건(의장 제의)	47

(15시23분 개의)

○의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1차 본회의는 오후 2시부터 개의할 것을 예정했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에 대한 마무리를 짓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본회의 개의가 천연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진재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현경대 의원 외 29인 발의)

(15시25분)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1항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임두빈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임두빈 의원입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7년 10월 16일 현경대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주소년원의 개원에 따라 현재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의 관할로 되어 있는 제주도의 소년보호사건을 제주지방법원의 관할로 변경하여 종전의 원거리 및 해상수송으로 인한 불편을 제거하고 사건처리의 신속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7년 10월 29일 제137회 국회

제6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동 제6차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현경대 의원 외 29인 발의)

(이상 2건 부록 1에 실음)

○의장 이재형 지금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안을 비롯해서 의안이 근 60건이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제 1건 했습니다. 여러분께 무엇을 의장이 부탁드리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2.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28분)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2항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조순형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조순형 의원입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7년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위반 또는 중대한 사정변경을 심사청구사유로 제한하는 규정과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등과 검사인지사건을 구속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범죄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범죄피해자도 증인으로서 당해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7년 10월 29일 제137회 국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 심사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민의 기본권 등을 더욱 보장하려는 타당한 입법이며, 기타 체계·형식과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따라 동 제6차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7년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헌법 개정에 따라 구금되었던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 이 피의자보상 결정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피의자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동 심의회의 보상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7년 10월 29일 제137회 국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그 문맥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1987년 10월 29일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일부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제3

항 중 ‘피의자보상의 지급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를 ‘피의자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2개 법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정부)

(이상 4건 부록 1에 실음)

○의장 이재형 그러면 먼저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범죄피해자구조법안(현경대·임두빈 의원 외 32인 발의)

(15시33분)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4항 범죄피해자구조법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종권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해 주실 분은 미리 내정이 되어 있을 테니까 이 앞으로 나오셨다가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권 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종권 의원입니다.

범죄피해자구조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7년 9월 21일 현경대 의원, 임두빈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87년 9월 22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늘날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서 강력사범이 증가하고 범죄양태도 흉포 다
양화해지고 있어서 이로 인한 범죄피해가 점차
심각해지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
계하에서는 그 피해자가 가장 소중한 생명 신체
상의 위해를 당하더라도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무
자력인 경우에는 아무런 금전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국가가 이러한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지
급함으로써 민법상 불법행위제도의 결함을 보완
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가해자의 불명 무자력 피해자 측의 생계
유지 곤란을 범죄피해구조 요건으로 하며,

둘째, 구조금의 종류는 유족보조금과 장해보조
금으로 하였고,

셋째, 구조금의 지급권자는 일정범위의 유족과
피해자 본인으로 하고, 구조금 지급 시 국가는
피해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토록 하
며,

네째,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
기 위하여 각 검찰청별로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기타 가구구조금제도, 구
조금의 환수소멸시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1987년 9월 29일 제137회 국회 제3
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법안
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거쳐 법문의 해석에
있어서 불분명한 부분 또 용어의 표현에 있어 적
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의결하였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범죄피해자구조법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구조법안
(현경대·임두빈 의원 외 32인)
(이상 2건 부록 1에 실음)
.....

○의장 이재형 그러면 범죄피해자구조법안에 대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
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혼인에대한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회
나석호 제출)

(15시37분)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5항 혼인에관한특례
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영욱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영욱 의원입
니다.

혼인에관한특례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철
의원 외 69인이 발의한 혼인에관한특례법안과 한
양순 의원·김현자 의원·김영정 의원·김장숙
의원·양경자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혼인에관한
특례법안을 1987년 10월 29일 제137회 국회 제6
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 심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법안을 심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대안을
작성 보고함에 따라 10월 29일 제6차 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안으로 의결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민법 제8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동성동본 혈족 사이의 혼인과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에 대하여
법률상 유효한 혼인신고를 일정기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
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사실혼관계를 입
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케 하고,

셋째, 혼인신고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809조에
서 금지하고 있는 혼인관계인지의 여부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이 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
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으
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혼인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부록 1에 실음)

○의장 이재형 그러면 혼인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고 그러셨나요? 잘 안 들리는데 없어요?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41분)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6항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김기배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배 의원 재무위원회 김기배 의원입니다.

1987년 8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내부자거래의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공시 제도를 보완하는 등 공정거래와 투자자보호제도를 강화하고,

둘째,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비하여 그 경영권 보호장치를 마련하며,

셋째, 증권거래소 및 증권감독원 등 증권관계 기관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넷째, 투자자문업 및 선물거래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그 외에도 투자자의 편의를 위하여 대체결제 및 유가증권신고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8월 13일 제135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동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8월 14일 제4차 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하여 증권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소위원회는 2차에 걸친 진지하고도 신중한 심사 끝에 공공적 법인의 민영화에 대비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다 많은 국민에게 분산하고 어느 특정인의 경영권지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일반주주들의 주식소유한도를 원안의 5% 이내에서 3% 이내로 축소하고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는 그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등 원안을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정부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1987년 10월 23일 제137회 국회 정기회 제7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무위원회)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이상 2건 부록 1에 실음)

○의장 이재형 그러면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45분)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7항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조병봉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봉 의원 재무위원회 조병봉 의원입니다.

1987년 8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 기업공개촉진법을 폐지하고 이의 주요내용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흡수 통합함으로써 법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관련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기업공개촉진법상의 기업공개명령 제도를 그 실효성의 확보를 위하여 기업공개권고 제도로 변경하고,

둘째, 종업원지주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 공개 또는 유상증자 시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 하며,

세째,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정부소유주 식의 광범한 분산매각을 위하여 그 매각방법을 증권거래법상 매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자 의 자격 및 1인당 매수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 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게는 할인매각 또는 매 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 귀속될 배당금이나 무상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액투자자 및 장기보유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네째, 공개법인에 대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분 지 1까지 무의결권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채발행한도 계산에 서 제외하는 등 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의 효율화 및 당해 금융기관 거래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은행법상의 한도를 초과하여 유가 증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기타 제도적 준비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8월 13일 제135회 국 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동 개정법률안을 상 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 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1987년 8 월 14일 제4차 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하여 증권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 였으며 동 소위원회는 2차에 걸친 진지하고도 신 중한 심사 끝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읍 니다.

첫째, 기업공개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권고 불이행 기업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신고 서 수리거부 이외에 금융기관의 여신제한을 요청 할 수 있도록 그 제재수단을 강화하였고,

둘째, 원안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신종 사채의 종류를 이익참가부사채 등을 예시하여 위 임하며,

세째, 금융기관 유가증권 보유한도에 관한 특

례 신설에 있어 그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금융기관 거래기업의 재무구조 재선을 위한 유가 증권 발행에 한하여 그 초과보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조항인 벌칙에 관한 경과조 치를 삭제하는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1987년 10월 23일 제7차 위원회에 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보다 자세한 사항 에 대하여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 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무위원회)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정부)
(이상 2건 부록 1에 실음)

.....

○의장 이재형 그러면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 분과 기타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51분)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8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정창화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화 의원 재무위원회 정창화 의원입니다.

1987년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9월 30일 회부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87년 10월 20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정 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 이를 신중히 심사한 결 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 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15시55분)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숙사건축용지로 양도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토록 하고, 기업이 종업원을 위하여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기숙사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10%에 상당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하는 동시에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용주택에 대하여는 100% 특별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숙사 및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업양수도방식으로 개인중소기업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세 등을 감면하여 주는 등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세째는 농어촌 의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의료취약지역 내에 민간병원을 신설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종합병원 등이 동 지역 내에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째는 기업공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매물가상승률이 25% 미만인 경우에도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종업원지주제 실시 기업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기업이 사립학교에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에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5% 법인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공공법인에 한 국관광공사 등 7개 법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무위원회)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이상 2건 부록 1에 실음)

.....

○의장 이재형 그러면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9항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심정구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 의원 재무위원회 심정구 의원입니다.

1987년 10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범세계적으로 상품분류체계를 통일하기 위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있어 관세율표상 상품분류체계를 현행 관세협력이사회의 상품분류체계로부터 위 협약에 의한 상품분류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앞으로의 수출입정책 등 제반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현행 관세율표상의 총 2301개 세목이 2606개로 변경되고 관세율은 현행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서로 다른 여러 물품들이 개정관세율상 한 세목으로 통합되는 경우에는 그 세목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물품의 현행 관세율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135개 세목 중 일부 품목의 관세율이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10월 22일 제137회 국회 정기회 제6차 위원회에서 동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과정을 거쳐 보다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소위원회의 진지하고도 신중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1987년 10월 23일 제7차 재무위원회에서 이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에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무위원회)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이상 2건 부록 1에 실음)

○의장 이재형 그러면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자금관리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59분)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10항 자금관리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임영득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득 의원 재무위원회 임영득 의원입니다.

자금관리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1987년 10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0월 20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정부원안대로 의결한 후 법사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정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금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설치하되 이 회계 안에 일반회계의 출자 출연을 승계한 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용자잔액이 18억 원에 불과한 대충자금계정을 자금운용계정과 통합하여 용자계정으로 상환업무만을 남기고 있는 청구권자금회계를 차관자금계정과 통합하여 차관계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각종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1년 이상 여유자금이나 체신자금은 그 설치근거법에 예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회계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되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도록 하였고,

세째, 이 회계의 재정지출을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였으며,

네째, 재정용자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재정용자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재정자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재정자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자금관리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무위원회)

자금관리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

(정부)

(이상 2건 부록 1에 실음)

(이재형 의장, 장성만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장성만 그러면 자금관리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물품관리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3분)

○부의장 장성만 의사일정 제11항 물품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이영준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 재무위원회 이영준 의원입니다.

물품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7년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분류체계를 기능별 성질별 기관별로 분류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를 추진할 수 있게 하며,

둘째, 매년 증가하는 물품구매 예산규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요 물품에 대한 정수와 소요기준을 조달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이를 예산제도와 연계시키고,

세째, 국가가 구매할 물품을 사전에 예시하는 구매예시제도를 도입하며,

네째, 불용품과 장기 사장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불용품의 무상양여제도와 내구성물

품의 무상대부제도를 도입하고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정비 활용하기 위한 물품정리제도를 보완하며, 그 밖에도 물품관리에 대한 각종 계획과 보고제도를 간소화하고 특별재물조사제도의 신설 및 각종 물품관리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10월 22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정을 거쳐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였으며, 1987년 10월 23일 제7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달청장이 주요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독립기관인 국회와 대법원에 대해서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조달청장이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직접 정비하거나 정비전문기관 또는 정비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정비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현행과 같이 조달청에서만 정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물품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무위원회)
물품관리법 개정법률안
(정부)
(이상 2건 부록 1에 실음)

.....

○부의장 장성만 그러면 물품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해양개발기본법안(이상희·김현욱·류홍수·정현경 의원 외 49인 발의)

(16시7분)

○부의장 장성만 의사일정 제12항 해양개발기본법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김문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의원 경제과학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해양개발기본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12월 17일 이상희 의원, 김현욱 의원, 류홍수 의원, 정현경 의원 외 4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8일 자로 경제과학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것입니다.

본 법안은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 및 보전에 필요한 정부의 기본정책방향을 규정하고 해양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범국가적 해양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1987년 10월 22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이상희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7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1987년 10월 29일 제9차 경과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해양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 의결한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해양개발기본법안 심사보고서
(경제과학위원회)

해양개발기본법안(이상희·김현욱·류홍수·정현경 의원 외 49인)

(이상 2건 부록 1에 실음)

.....

○부의장 장성만 그러면 해양개발기본법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도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정족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안(박중문·이진·김문기 의원 외 37인 발의)

(16시10분)

○부의장 장성만 의사일정 제13항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양경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자 의원 경제과학위원회 양경자 의원입니다.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7년 10월 16일 박중문 의원, 이진 의원, 김문기 의원 외 3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9일 자로 경제과학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것입니다.

본 법안은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 촉진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대외개방에 따른 충격에 대처하고 소프트웨어의 자생력과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1987년 10월 22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박중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7인 법안심사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1987년 10월 29일 제9차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소프트웨어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경제과학위원회)

소프트웨어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안
(박중문·이진·김문기 의원 외 37인)
(이상 2건 부록 1에 실음)
.....

○부의장 장성만 그러면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안에 대하여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 도서관법 개정법률안(김현자·조상현·조일문·진치범·김형호·한양순·박성태·홍종욱 의원 외 30인 발의)

17.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안(이종찬·최창규·김영정·홍종욱·조일문·김형호·남재희·조남조 의원 외 57인 발의)

(16시13분)

○부의장 장성만 의사일정 제14항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도서관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김현자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자 의원 문교공보위원회 김현자 의원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도서관법 개정법률안,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4건의 법률안을 제137회 국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도서관법 개정법률안과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안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도서관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동 법안 제10조제2항 중 기금의 운용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도서관진흥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추가 신설하고, 부칙에 특수도서관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을 두었으며,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는 동 법안 제5조 및 제6조 중 사료연구위원 및 조사위원의 자격기준, 위촉절차, 지급되는 경비 및 수당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것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비밀문서

열람 등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한시켰으며,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고, 이 네 가지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참 조)
-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도서관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문교공보위원회)
-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정부)
- 도서관법 개정법률안
(김현자·조상현·조일문·진치범·김형효·한양순·박성태·홍종욱 의원 외 30인)
-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안
(이종찬·최창규·김영정·홍종욱·조일문·김형효·남재희·조남조 의원 외 57인)
(이상 8건 부록 1에 실음)

○부의장 장성만 그러면 먼저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청소년육성법안(대안)(문교공보위원장 이영일 제출)

(16시17분)

○부의장 장성만 의사일정 제18항 청소년육성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한양순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순 의원 문교공보위원회 한양순 의원입니다.

청소년육성법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1986년 12월 17일 김정례·안병규·안갑준·조일문·한양순 의원 외 47인이 발의한 청소년육성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안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과 한국청소년연구원 설립에 따른 정관 사항, 사업, 임원, 원장, 출연금,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등 대폭적인 수정과 조문 신설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참 조)
- 청소년육성법안(대안)

(문교공보위원장)
(부록 1에 실음)

.....

○부의장 장성만 그러면 청소년육성법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전통사찰보존법안(김집·홍종욱 의원 외 25인 발의)

20.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조상현 의원 외 37인 발의)

(16시19분)

○**부의장 장성만** 의사일정 제19항 전통사찰보존 법안, 의사일정 제20항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 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조상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현 의원** 문교공보위원회 조상현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6일 김집 의원, 홍종욱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발의된 전통사찰보존법안과 동 일자로 조상현 의원 외 37인으로부터 발의된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 두 법률안을 제 137회 국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전통사찰보존법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전통사찰보존법안의 수정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타 종교와 형평을 고려하여 벌칙규정 중 과태료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 두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참 조)
- 전통사찰보존법안 심사보고서
-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문교공보위원회)
- 전통사찰보존법안
(김집·홍종욱 의원 외 25인)
-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조상현 의원 외 37인)
(이상 4건 부록 1에 실음)
-

○**부의장 장성만** 그러면 먼저 전통사찰보존법안

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안(정부 제출)
(16시22분)

○**부의장 장성만** 의사일정 제21항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류상호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의원** 농수산위원회 류상호 의원입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안에 대한 농수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7년 10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0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림수산물의 저장 가공 등 식품에 관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을 보호 육성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기술기반을 향상시켜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의 제고를 통한 농어민 소득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정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위한 출연금을 예산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정부는 국유재산을 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과학기술원은 연구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식품연구에 관련된 장비 및 기자재 등을 연구원에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심사소위원회를 거쳐서 지난 10월 21일 제8차 농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및 체계심사

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안 심사보고서
(농수산위원회)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안
(정부)
(이상 2건 부록 1에 실음)

○**부의장 장성만** 그러면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
성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의료기사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25분)

○**부의장 장성만** 의사일정 제22항 의료기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완태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태 의원** 보사위원회 김완태 의원입니다.
의료기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안경사제도를 신설하여 안경사의 자
격을 갖춘 자만이 안경을 조제·판매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일부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경의 조제·판매업무를 하는 자는 면
허를 받도록 하고 안경의 조제·판매업소를 개설
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며,

둘째, 각종 의료기사단체를 법인으로 하도록
하고 입회자격, 정관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
며,

세째, 장애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의료기사
등의 결격사유 중 농자·아자·맹자를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법안의 제안취
지는 대체로 합당하나 이 법 시행 당시에 안경업
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경과조치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수정안을 의결하였읍
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료기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건사회위원회)
의료기사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이상 2건 부록 1에 실음)

○**부의장 장성만** 그러면 의료기사법 중 개정법
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
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안(정부 제출)

24.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28분)

○**부의장 장성만** 의사일정 제23항 후천성면역결
핍증예방법안, 의사일정 제24항 검역법 중 개정
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박성태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박성태 의원입니
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안과 검역법 중 개정법
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이 법안은 국제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후
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
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제정법안
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를 진단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
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둘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나 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
사할 수 없도록 하며,

세째,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혈액 및 수입혈액제제에 대하여는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네째,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감염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서 보호 및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법문 구성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이미 세계적으로 근절된 두창을 검역전염병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검역전염병에서 두창을 제외하고 둘째,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의심이 있는 선박 등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의 장 등에게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그 제안취지가 합당하고 법문 구성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안 심사보고서
-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보건사회위원회)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안
-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정부)
- (이상 4건 부록 1에 실음)

.....

(장성만 부의장, 이재형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이재형 그러면 먼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박성태·김집 의원 외 25인 발의)

26.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박성태·김집 의원 외 24인 발의)
(16시33분)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25항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박성태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박성태 의원입니다.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의료보험 적용범위 및 급여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박성태·김집 의원 외 25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피부양자의 범위를 피보험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형제자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둘째, 직장피보험자가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직장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세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을 의료보험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보험연합회가 보험재정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하며,

네째, 요양급여기간은 연간 180일로 하되 일정한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법안의 제안취지는 대체로 타당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보험 적용범위 및 급여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박성태 의원,

김집 의원 외 24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피부양자의 범위를 피보험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형제자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둘째, 연금수급자에 대한 의료보험 강제적용을 임의적용으로 전환하며,

셋째, 요양급여의 기간은 연간 180일로 하되 일정한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급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가 법안의 제안취지가 대체로 타당하고 범문의 구성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
법률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보건사회위원회)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박성태·김집 의원 외 25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
법률안

(박성태·김집 의원 외 24인)

(이상 4건 부록 1에 실음)

○의장 이재형 그러면 먼저 의료보험법 중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
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7. 대한적십자사조직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38분)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27항 대한적십자사조

직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장숙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김장숙 의원입니
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 및 사업을 현
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
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적십자사도 다른 법인과 동일하게
법인등기를 하도록 하고,

둘째, 대한적십자사의 조직위원회를 전국대의
원총회로 확대 개편하며,

셋째,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
여 적십자사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넷째, 대한적십자사는 원래의 사업수행에 지장
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대한적십자사가 사회여건 변
화에 대응하여 적십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와 같은 개정이 필요함을 인정
하여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한적십자사조직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건사회위원회)

대한적십자사조직법 개정법률안

(정부)

(이상 2건 부록 2에 실음)

○의장 이재형 그러면 대한적십자사조직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40분)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28항 환경오염방지사

업단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장숙 의원 한 번 더 수고해 주세요.

○김장숙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김장숙 의원입니다.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7년 10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의 명칭을 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의 명칭을 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둘째, 환경관리공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가는 환경관리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환경관리공단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환경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10월 21일 제7차 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 제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건사회위원회)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이상 2건 부록 2에 실음)

○의장 이재형 그러면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남녀고용평등법안(김영정·김장숙 의원 외 44인 발의)

(16시43분)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29항 남녀고용평등법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영정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정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김영정 의원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는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육아휴직을 제도화하며 여성의 직업능력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김영정 의원·김장숙 의원 외 44인이 제안한 법안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노동부장관은 근로여성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둘째,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근로여성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셋째,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넷째, 정년 및 해고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과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며,

다섯째,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은 1회 1자녀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무급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법안의 입법취지는 대체로 타당하나 일부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육아휴직제의 시행에 있어 1회 1자녀에 한하여라는 횟수제한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둘째,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조항에 대한 벌칙을 완화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

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남녀고용평등법안 심사보고서
(보건사회위원회)
남녀고용평등법안
(김영정 · 김장숙 의원 외 44인)
(이상 2건 부록 2에 실음)

.....

○의장 이재형 그러면 남녀고용평등법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 여러분께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히 보사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사보고하시는 의원들이 제안자 대표로서 여기 설명이 되는데 법안을 자기가 제안해 놓고 그것을 심사하고 수정까지 해서 그것을 또 대표해서 하는 것, 그럴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피할 수 없으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회 전원이 제안자가 됐을 적에는 도리가 없이 위원 중에서, 제안자 중에서 누가 나와서 심사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만 꼭 그렇지 않을 적에는 이렇게 제안했다 그런데 이렇게 수정했다, 심사했다 하는 것을 동일인이 하는 것은 그렇게 국회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30.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31.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49분)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30항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정시봉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봉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정시봉 의원입니

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 개정법률안의 제출이유는 산특회계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10월 21일 제137회 국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동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 개정법률안의 제출이유는 행정심판법의 제정에 따라 행정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는 등 행정구제체도가 개선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이 법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심사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하고,

둘째, 심사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이 그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며,

셋째, 불복고지제도를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1987년 10월 21일 제137회 국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동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산재근로자가 심사청구기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의 관계조문을 본 법에 명시한 것입니다.

이상 2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 보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보건사회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

(이상 2건 정부)

(이상 4건 부록 2에 실음)

○의장 이재형 그러면 먼저 산업재해보상특별회 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 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2.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보건사회 위원장 박준병 제출)

(16시55분)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32항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중위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중위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김중위 의원입니 다.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 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 위를 말씀드리면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이 1987년 9월 3일 정시봉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발 의된 후 동년 10월 5일 이종찬·권중동 의원 외 143인과 김완태 의원 외 69인이 그리고 동년 10 월 23일 이택돈·한석봉 의원 외 19인이 각각 발 의하여 4개의 법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

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4개의 법안의 개정법 률안 중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1987년 10 월 22일 제137회 국회 제8차 위원회에서 그리고 1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1987년 10월 26일 제9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 고를 각각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개정법률안의 심사를 위임한 바 있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동 개정법 률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률안에 대하여 4건의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개정 안 내용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해서 1987년 10월 28일 제137회 국회 제10차 위원회에 보고하 여 의결함으로써 4건의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본 법안 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노동조합의 설립형태와 설립요건을 규정 하고 있는 현행 제13조제1항을 삭제함으로써 노 동조합의 설립형태와 설립요건을 자율화하였으 며,

둘째, 현행 제15조의 신고증 교부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3일 이내에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노동조합해산권과 임원개선명령권을 규정하고 있던 현행 제32조를 삭제하였으며,

네째, 제35조에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 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고,

다섯째, 안 제39조에서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 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경우 유니온샵 협약체결을 인정토록 하였으나 유니온샵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 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보건사회위원장)

(부록 2에 실음)

○의장 이재형 그러면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보건사회위원장 박준병 제출)

(16시59분)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33항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강창희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희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강창희 의원입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이 1987년 9월 3일 정시봉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동년 10월 5일 우병규·임두빈 의원 외 143인이, 동년 10월 5일 김완태 의원 외 69인이, 동년 10월 23일 이택돈·한석봉 의원 외 19인이 각각 발의하여 4개의 개정법률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4건의 개정법률안 중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1987년 10월 22일 제137회 국회 제8차 위원회에서, 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1987년 10월 26일 제9차 위원회에서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개정법률안의 심사를 위임한 바 있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하나의 법률안에 대하여 4건의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개정안 내용을 통합 단일안을 마련하여 1987년 10월 28일 제137회 국회 제10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4건의 원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4조에서 공익사업으로 열거하고 있는 석탄광업 산업용 연료사업을 삭제하는 등 공

익사업의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둘째, 안 제5조의2항을 신설하여 노동쟁의의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조정절차와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18조에서 알선기능을 노동위원회가 담당토록 하였으며,

넷째, 안 제30조에서 공익사업의 직권중재에 있어서 행정관청은 요구만 할 수 있고 결정은 노동위원회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보건사회위원장)

(부록 2에 실음)

○의장 이재형 그러면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보건사회위원장 박준병 제출)

(17시3분)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34항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종위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위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김종위 의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5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이 김영배 의원 외 101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동년 12월 17일 김일윤 의원 외 19인이, 1987년 10월 5일 박규식·박성태 의원 외 143인, 동년 10월 5일 김영배 의원 외 69인이, 동

년 10월 24일 이택돈·한석봉 의원 외 19인이 각각 발의하여 5개 법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5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의원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동 개정법률안의 보다 진지한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위임한 바 있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동 개정법률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률안에 대하여 5건의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개정안 내용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여 1987년 10월 28일 제137회 국회 제10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5건의 원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모든 채권과 조세·공과금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42조제2항을 삭제하여 변형근로시간제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보건사회위원장)

(부록 2에 실음)

○의장 이재형 그러면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5. 노사협의회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보건사회위원장 박준병 제출)

(17시6분)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35항 노사협의회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완태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태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김완태 의원입니다.

노사협의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5년 11월 13일 김득수 의원 외 101인과 동년 12월 13일에 함중환 의원 외 20인이 노사협의회법 폐지법안이 각각 발의된 후 1987년 10월 5일에는 김기배·심정구·김중위 의원 외 142인이, 같은 날 박종률 의원 외 69인이 노사협의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하여 4개의 법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4개의 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동 법안의 보다 진지한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위임한 바 있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차에 걸쳐 동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개의 법률에 대해 4개의 폐지 및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개정안 내용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여 1987년 10월 28일 제137회 국회 제10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4개의 원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 본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노사협의회는 자율성 보장과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9조, 관계 공무원의 의견진술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18조, 행정관청의 노사협의회 해산 및 위원개선명령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19조를 각각 삭제하였으며,

둘째, 안 제20조에서 노사협의회는 협의사항에 인사, 노무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21조에서는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중 기업의 경영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충실하게 알려 주도록 보고사항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노사협의회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보건사회위원장)
(부록 2에 실음)
.....

○의장 이재형 노사협의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안(이상희·심명보·이종찬·우병규·정선호·김두중 의원 외 36인 발의)
(17시10분)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36항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심완구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구 의원 상공위원회 심완구 의원입니다.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7년 10월 16일 이상희 의원 외 41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987년 10월 19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태양·해양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의 적극적인 개발 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불가결한 에너지 공급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기반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법안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정부로 하여금 대체에너지 개발에 관한 장기계획 및 연간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둘째, 대체에너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대학 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세째, 동력자원부에 정부관련부처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대체에너지개발정책심의회를 두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10월 21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이상희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하여 본 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쳤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안 심사보고서
(상공위원회)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안
(이상희·심명보·이종찬·우병규·정선호·김두중 의원 외 36인)
(이상 2건 부록 2에 실음)

.....
○의장 이재형 그러면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안(이상희·강경식(민주정의당)·정동성·徐廷和·이성열·조경목·진치범 의원 외 40인 발의)
(17시13분)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37항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우병규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규 의원 상공위원회 우병규 의원입니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7년 10월 16일 이상희 의원 외 46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987년 10월 19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가올 2000년대의 항공우주시대 진입을 통해 선진국을 지향할 수 있는 국가적 종합추진체제를 확립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선진기술입국을 실현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산업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행 항공공업진흥법을 발전적으로 폐지시키고 본 법안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정부는 항공우주산업 개발촉진을 위해서 연구개발 전문계열화 기술도입계획 등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상공부장관은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목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고사업자 중 특정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세째, 정부는 항공우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서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사업자에게 국유시설 또는 기기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양여 사용 수 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정부는 항공 및 우주의 분야별 연구기관 또는 종합연구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10월 21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이상희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하여 본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9조를 수정하여 신고사업자와 특정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지·폐지하고자 할 때 양자의 신고기간에 차이를 두었으며,

둘째, 안 제16조제4항에 규정된 실무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안 심사보고서
(상공위원회)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안
(이상희·강경식(민주정의당)·정동성·徐廷和·
이성열·조경목·진치범 의원 외 40인)
(이상 2건 부록 2에 실음)

.....

○의장 이재형 그러면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장 이대순 제출)

(17시16분)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38항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박재홍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의원 박재홍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보조직원의 종류 및 직급을 조정하고 법 개정의 제한규정이 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활동비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보조직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6급상당 비서 1인을 신설하고 그 대신 고용직1종 운전원 1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경우 승용차를 의원 각자가 자비로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의원 보조직원으로 운전원을 둔다는 것은 사리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이들이 운전업무와 동시에 비서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조직원의 정원을 늘리지 않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방안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둘째로 현행 법률 제11조제2항은 개정 당시의 국회의원임기 중 법 개정의 효력발생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한을 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또는 활동비에만 적용되도록 하여 의원보조직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이 그 시행일은 개정법률의 정부이송 및 공포기간과 개정에 따르는 인사처리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금년 12월 1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형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이 법률에 대해서는 이대순·김현규·정재원·양정규 의원 외 5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남 의원 그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의원 민주정의당 소속 정남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의 수당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의원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인 동시에 국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부를 대표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헌법 및 국회법상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반의원과 동액으로 하고 있음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 및 부의장은 보수면에서 그 직위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인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의장은 내각 총리대신의 보수월액을, 부의장은 국무대신의 보수월액을 각각 지급받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 의회민주주의 선진국들에 있어서도 의장은 일반의원과 다른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에서는 국회의장 및 부의장의 수당을 일반의원과는 차등을 두어서 국회의장의 수당은 대법원장의 88년도 월보수액과 동일한 월 132만 1500원으로, 국회부의장은 행정부 부총리의 88년도 보수액과 동일한 월 96만 9000원으로 하여 입법부의 장인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을 수당의 면에서 예우하고자 본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법률 수정안은 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88년에 새로이 구성되는 제13대 국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에 첨부되어 있는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 조)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이대순 의원·김현규 의원·정재원 의원·양정규
의원 외 152인)
(이상 2건 부록 2에 실음)
.....

○의장 이재형 수정안이기 때문에 토론하실 분이 없다 하더라도 표결에 붙이는 게 관례일 것입

니다. 그러나 이의가 없으시다면 그대로 처리할까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안을 비롯해서 수정부분과 또 기타 원안부분을 그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9. 대통령선거법안(내무위원장 전병우 제출)
(17시23분)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39항 대통령선거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구용상 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용상 의원 내무위원회 구용상입니다.

대통령선거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27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확정 공포된 개정헌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대통령직선제도가 채택됨에 따라 현행 대통령선거법을 폐지하고 동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공정한 선거의 관리와 그 절차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헌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하게 된 제정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4일 제137회 국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구성된 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한민주당, 한국국민당의 대통령선거법 개정시안과 8인 정치회담의 합의결과를 토대로 소위원회안을 성안하여 제안한 것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그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개시하도록 하였고,

둘째, 선거인명부 사본교부제도를 채택함과 동시에 선거인명부 작성 후에도 그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소이전신고를 하여 전입한 주소지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정당이 추천하는 대통령후보자 1인은 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고 5000만원을 기탁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무소속 후보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중 5개 시·도 이상에서 선거권자 5000 이상 7000 이하가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첨부하고 1억

원을 기탁하도록 하였고,

네째, 선거사무의 관리를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서울특별시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개표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에는 100인 이내, 선거연락소에는 40인 이내, 투표구에는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후보자와 연설회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은 각각 5회 이내, 대담 및 토론은 각각 3회 이내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연설회는 시·도별 3회 이내, 연설회는 구·시의 동과 군의 읍·면마다 1회씩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후보자의 기호 및 인쇄순위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현재 먼저 국회의석이 있는 정당추천 후보자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하고 다음에 국회의석이 없는 정당추천 후보자는 소속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그다음에 무소속 후보자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로 하고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득표자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인 자로 하였습니다.

다만 본 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어 당 위원회에서 표결로 가결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통령선거법안

(내무위원장)
(부록 2에 실음)

.....

○**의장 이재형**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시간은 국회법 제97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토론에 안동선 의원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안동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가칭 평화민주당 소속의 안동선 의원입니다.

지난 6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노태우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이 국회 내에서는 여야가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산적한 정치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나왔고 또 더욱 커다란 업적으로써 합의개헌을 이루었고 지난 10월 27일 자는 국민투표를 성공리에 마침으로 해서 여야합의에 의한 이 정신이 이제 이 땅 위에도 정착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러한 합의와 대화를 통한 모든 정치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이런 와중에 이런 과정에, 어제 이 내무위원회에서 대통령선거법을 마무리 짓는 단계에 있어서 민정당 측이 일방적으로 또 최소한의 서로 간에 타협점을 이룬 것을 오늘 아침에 표결로 밀어붙임으로 해서 민정당 측의 6·29선언의 그 허구성의 일면을 보는 것 같고 이로 인해서 본 의원이 이 대통령선거법에 대해서 반대토론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선거일에 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인 개인협상에서 대통령선거일을 임기만료일 전 70일부터 40일까지 하도록 합의를 해서 이를 개정헌법 제68조에 명백히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기초소위가 헌법 부칙 제2조에 최초의 대통령선거일을 40일 이전으로 규정한 것을 기화로 또다시 대통령선거법 부칙 4조에 이것을 재차 규정한 것은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대단히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우리 야당의 내부사정을 감안하여서 보더라도 이것은 조기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창당 중에 있는 우리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후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또 선거운동에 제약을 가해야겠다는 비열한 책략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책략이 숨어 있다고 하면은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어제 내무 전체회의에서 민정당 간사가 분명히 선거법 부칙 4조를 삭제하겠다는 언질을 해 놓고 오늘 아침에 그대로 전격적으로 표결에 붙여서 원안대로 밀어붙여 가지고 통과시켰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여당이 그토록 떠들어 대는 정치신의를 스스로 저버린 그런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선거법 부칙 4조가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 부칙 2조에 의해서 임기만료일 40일 전이면 언제라도 선거를 실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의 운용이란 관례의 범위 내에서 일반인의 기대와 예정에 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 부칙 2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조기선거를 실시해도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며 헌법 본문 제68조와 대통령선거법 본문 제93조에서 규정한 70일 이후 40일 이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이것이 헌법정신과 8인 정치회담의 합의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번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인 1988년 2월 24일부터 40일 전인 88년 1월 16일 이전에 실시하되 선거일 전 70일 후에 즉 1987년 12월 17일 이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부칙조항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87년 12월 17일에서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잘 아시다시피 창당과정에 있는 우리 평화민주당은 민족사적 과제의 해결이라는 책무를 지고 오늘 창당발기인대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평민당은 문자 그대로 중산층 이하 노동자 농민 등 그야말로 보통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김대중 선생을 대통령후보로 정식 추대하게 된 국민정당인 것입니다.

우리 당의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만약 부당하게 조기선거를 실시를 한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선거일을 앞당길 만큼 그 이상의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서 경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거인명부의 확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 소위에서 명부확정일을 선거일 전 7일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소위원회 합의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정하는 것이 내무위 전체회의의 기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명부사본을 교부받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인명부가 선거일 7일 전에 확정된다면 명부사본을 교부받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5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당과 같은 행정력을 갖지 못한 우리 야당들이 어떻게 이중등록자 유폐 선거권자 등을 가려낼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명부확정일을 선거일 9일 전으로 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주소지 이전한 선거권자들에게 투표에 불편을 준다고 민정당 측에서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극소수 주소이전 선거권자들의 불편이 선거부정의 방지보다 더 소중한단 말입니까?

세 번째, 부재자투표의 혼합개표에 관해서 70만에 달하는 군인 등 부재자의 투표가 부정선거의 중대한 유형 중의 하나였다는 사실은 과거의 선거사를 볼 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은 애당초 군인들의 투표를 현지에서 등록하여 일반인과 함께 투표하도록 제안했던 것입니다.

부재자투표함의 분리개표는 부재자투표의 부정을 가급적 막아 보자는 충정에서 지난번 내무위에서 제안했읍니다라는 민정당 측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선거인명부 확정과 마찬가지로 조작 부정투표된 부재자투표를 혼합개표함으로 해서 부정투표라는 사실이 탄로될까 봐 이것을 은폐하고 호도하려는 저의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재자투표용 기표소 설치에 관해서 이번에 부재자투표 부정을 가급적 방지하자고 하는 목적으로 군인 등 부재자투표를 위해 영내에 따로 기표소 설치를 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부재자용 우편투표용지를 선거일 전 16일부터 이틀간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에 기표소를 설치하고 이것을 고시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거법 시행령에 반영시키겠다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라는 본 의원이 생각키는 아예 선거법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쟁점을 우리 야당이 거론한 것은 민주화 추세에 발맞추어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유익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또한 차기정부의 정통성은 바로 공명선거에서 나온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공명정대한 선거를 기약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우리의 이 국회에서 마련하자고 주장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나와서 이 반대토론에 응한 것입니다.

때문에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국회에서 6·29선언을 위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개헌까지 이른 마당에 이 공정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법을 내무위원회에서 조금만 여당이 타협을 받아들이고 또 대화에 응하고 합

의를 했다면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반대토론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어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일방적으로 민정당이 표로 밀어붙임으로 해서 그야말로 합의정신을 깨 버리고 이제 앞으로의 정치에 대한 커다란 우려를 낳기 때문에 본 의원이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형 다음에는 구용상 의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용상 의원 내무위원회 구용상 의원입니다.

대통령선거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입장에서 찬성토론에 참여할 입장이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본 선거법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해명 겸해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선배·동료 의원께서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 노태우 민주화선언에 따라서 여야 8인 대표가 역사적인 새 민주헌법을 마련한 데 이어서 동 8인 대표는 동료 의원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다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9일까지 무려 일곱 차례에 걸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7대 대통령선거법에 기초를 둔 총 71개 항목에 달하는 새 대통령선거법안에 대한 합의서명을 보게 된 것이며 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 헌정사상 일찌기 없었던 일로서 민주화시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임을 잘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2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여야 8인 정치회담에서는 동 선거법의 주요사항을 합의하면서 선거일정과 벌칙조정 그리고 조문 및 체계정리는 내무위원회 소위원회에 위임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내무위원회에서는 11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자구 하나하나에까지 정성과 주의를 다하여 조문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였으며 문제없는 조항은 제외를 하고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문제조항에 대해서는 진지한 심의를 하여서 본문 172개조, 부칙 5개조에 대해서 합의를 보아서 대통령선거법안을 성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 중 오늘 몇 가지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초의 대통령선거일은 개정헌법 시행일

로부터 40일까지 실시한다는 부칙조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선배·동료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 부칙 제2조의1항을 법체계상 사실상 그대로 규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헌법 부칙 제2조 1항에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일은 이 헌법 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임기만료일 70일 내지 40일 전에 실시한다'는 헌법 제68조1항과 대통령선거법 제93조1항의 규정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인 것입니다.

헌법 부칙 제2조1항은 헌법 부칙 제1조의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실시한다'는 규정과 동일한 맥락에서 절차규정이 아니며 이 헌법규정에 의해서 직접 실시되는 그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선거법에는 법체계상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법이론상으로도 대단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선거인명부 확정에 대해서는 당초 민정당안은 선거일 전 5일을, 민주당은 선거일 전 11일을 주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선거일 전 7일로 합의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실제 소요기간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명부 작성에 7일, 명부열람에 5일, 의의심사 결정 및 통보에 4일, 재심청구 및 결정에 4일, 명부수정에 1일 등 실제로 꼭 필요한 필수적인 법정기간이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21일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일 전 9일까지 명부작성에 관한 업무가 사실상 계속되기 때문에 적어도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후 2일 동안 명부를 행정기관에서 정리를 마쳐야 명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일 전 7일에 확정하도록 여야 간에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선거인명부는 연평균 20.9%에 달하는 주소이동이 있는 사람을 최대한 구제해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헌법정신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선거일에 임박해 확정시켜야 정확한 명부가 작성된다는 그러한 사정도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부재자우편투표의 혼합개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재자우편투표의 개표에

대해서는 민정당안, 민주당안 모두 당초에 혼합 개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을 잘 모르시고 아마 중간에 — · — 드셔서 이렇게 잘못 판단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8인 회담에서도 그대로 자동적으로 합의된 부분입니다.

더구나 신민당안과 국민당안도 7대 대통령선거 법과 마찬가지로 혼합개표로 되어 있어서 본 소위원회에서도 이의 없이 그대로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항은 사실상 63년도 이래 현재까지 계속해서 일반투표함과 혼합개표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재자우편투표용지는 선거일 전 16일부터 발송하는데 투표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설치 공고하도록 돼 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이의에 대해서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설치 공고하도록 돼 있는 것은 일반투표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부재자우편투표용지 기표소는 사실상 선거일 전 16일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재자가 투표용지에 기표하는데 실제로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례로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편투표용 투표함은 우편투표용지 발송과 동시에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도록 대통령령에 동시에 규정되어 있어서 부재자우편투표에는 아무런 불편이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헌법에 따른 민주화 일정에 있어서 최초로 성취해야 할 과제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것이며 여기에 대통령선거법 마련은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민주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난 9월 24일부터 개최된 여야 8인 정치회담에서 총 일곱 차례에 걸쳐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거쳐 71개 주요 쟁점항목에 대해서 완전타협을 본 바 있고 이와 병행해서 내무위 소위원회에서 지난 9월 24일부터 총 여섯 차례에 걸쳐서 여야 간에 진지한 심의를 거듭한 끝에 지난 10월 26일 소위원회에

서 완전합의를 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와 국회에서의 관례 그리고 의회정치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타협의 정신을 무시함으로써 기히 합의된 사항을 부정하는 등 8인 정치회담과 내무위원회 선거법 심사소위의 합의와 결정을 뒤늦게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신의가 무엇인지 본 의원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선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회의에 제안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형 찬반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구용상 의원 발언 중에 — · — 들었다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품위에 맞는 말씀이 아니니까 나중에 속기록을 조금 손을 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통령선거법안에 찬성하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웃음소리)

(「왜 웃고 그래요!」 하는 이 있음)

조용하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51인, 가 148인, 부 3인으로서 대통령선거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법률안(내무위원장 전병우 제출)

(17시56분)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40항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안영화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화 의원 내무위원회 안영화 의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제도를 신설하고 선거관리위원 구성에 정당

참여를 보장하며 개정헌법에 의하여 내부규율권이 부여됨에 따라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4일 제137회 국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구성된 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시안과 8인 정치회담의 합의결과를 토대로 소위원회안을 성안하여 제안한 것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앙 시·도,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9인으로,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7인으로 하고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의 제도를 신설 그 위탁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시·도선거관리위원은 국회의원선거권자 중에서 정당 추천 3인, 지방법원장 추천 3인, 자체 선정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도록 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은 그 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선거권자 중에서 정당 추천 3인, 자체 선정 6인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정당 추천 위원의 경우 선거공고일 후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선거권자 중에서 정당 추천 3인, 자체 선정 4인을 시·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째, 정당 추천 선거관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거기간 중 구·시·군의 정당 추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기간 중 상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네째, 이 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위원은 계속 재임하되 정당 추천 위원 중 제4당 이하가 된 정당이 제청 또는 추천한 위원은 이 법 시행일 후 5일에 해촉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당시의 제1 제2 제3당은 지체 없이 후임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내무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법률안

(내무위원장)

(부록 2에 실음)

(이재형 의장, 장성만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장성만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내무 위원장 전병우 제출)

(18시2분)

○부의장 장성만 의사일정 제41항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홍우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준 의원 내무위원회 홍우준 의원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7년 9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9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987년 10월 26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다만 공무원 상해보상급여를 국가가 지불하였던 것을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지불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에 따라 이와 관계되는 조항에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폐기하고 당 위원회안으로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족연금의 지급액을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타 퇴직공무원 및 유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계조항을 보완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 대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내무위원회가 마련하여 제출한 대안의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내무위원장)

(부록 2에 실음)

○부의장 장성만 그러면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광주직할시와전라남도의관할구역변경및송정시·광산군폐지에관한법률안(고귀남·이영일 의원 외 61인 발의)

(18시5분)

○부의장 장성만 의사일정 제42항 광주직할시와전라남도의관할구역변경및송정시·광산군폐지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조상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래 의원 내무위원회 조상래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와전라남도의관할구역변경및송정시·광산군폐지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7년 10월 19일 고귀남 의원 이영일 의원 외 6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광주직할시는 1986년 11월 1일 직할시로 승격되었으나 여타 직할시보다 관할구역이 협소하고 택지나 공장부지 등으로 개발할 여유면적이 거의 없어 호남지역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관할구역을 확장하여 국토 서남부의 성장거점도시로서 육성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전라남도의 송정시와 광산군 일원을 광주직할시에 편입하고 송정시 및 광산군을 폐지하

고,

둘째, 광주직할시에 편입되는 송정시와 광산군을 합병하여 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987년 10월 22일 제8차 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고귀남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1987년 10월 30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광주직할시와전라남도의관할구역변경및송정시·광산군폐지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광주직할시와전라남도의관할구역변경및송정시·광산군폐지에관한법률안

(고귀남·이영일 의원 외 61인)

(이상 4건 부록 2에 실음)

○부의장 장성만 그러면 광주직할시와전라남도의관할구역변경및송정시·광산군폐지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시8분)

○부의장 장성만 의사일정 제43항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완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태 의원 보사회위원회 김완태 의원입니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태아의 성감별행위 등 비윤리적인 진료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조산원과 간호원의 명칭을 각각 조산사

와 간호사로 변경하고 한의사의 임무에 한방보건지도 임무를 추가하며,

둘째, 장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농자·아자·맹자를 삭제하고, 셋째, 의료인의 태아 성감별행위를 금지하며, 넷째, 환자의 진료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송부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인의 진료거부금지를 규정함에 있어서 진료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의 내용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둘째,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사유를 조정하여 국가보안법·형법 및 보건의료관계법령 등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하며,

셋째,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시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하고,

넷째, 간호보조원의 명칭을 간호조무사로 개칭하는 것 등입니다.

이 수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토록 의뢰한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진료거부금지에 대한 정당한 이유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체계상 불합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삭제하고 기타 일부 체계와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내용은 시간관계상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지 못하고 별도의 유인물로 준비하여 보고서에 첨부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보건사회위원회)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이상 2건 부록 2에 실음)

.....

○부의장 장성만 그러면 먼저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

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

45. 198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8시13분)

○부의장 장성만 의사일정 제44항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45항 198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시채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시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시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8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1986년도 결산검사보고서가 1987년 9월 25일 정부 및 감사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0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8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보고 및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집행현황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비록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의 짧은 심사일정이었습니다마는 당 위원회에서는 불철주야로 국가재정활동의 결과인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정부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1986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4조 6993억 원, 세출결산액은 13조 7965억 원으로서 9028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315억 원은 87년도에 이월되어 집행되고 2500억 원은 1987년도 제1회 추가경정재원으로 3012억 원을 1987년도 세입에 이입되어 1988년도 세입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 8조 4640억 원, 관

세 1조 9425억 원, 방위세 1조 8434억 원, 교육세 3724억 원, 전매익금 9840억 원, 세외수입 1조 930억 원이 각각 징수가 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1조 3882억 원, 방위비 4조 3278억 원, 교육비 2조 7660억 원, 사회개발비 1조 873억 원, 경제개발비 2조 6201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1조 2959억 원, 채무상환 및 기타에 3112억 원이 각각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금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7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조 1484억 원, 세출결산액은 6조 9577억 원으로 1907억 원의 세잉여금이 발생하여 683억 원은 1987년도에 이월되고 1224억 원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거나 기금에 적립을 하였습니다.

둘째, 계속비에 있어서 1986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을 ADB 5차 차관 도로사업으로서 예산총액 1541억 원 중 1518억 원을 지출하고, 17억 원은 87년도로 이월하였고, 6억 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세째, 정부기금에 있어서는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19개 기금의 1986년도 말 현재의 재산상태는 자산 9조 7995억 원, 부채 9조 4149억 원, 자본 3846억 원이며, 손익상황은 총수익 3조 2560억 원, 총비용 3조 1652억 원으로 908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현금 회계처리방식에 의한 11개 기금의 총수입은 1401억 원이며 총지출은 1375억 원으로 26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이입을 하였습니다.

네째, 국가채권에 있어서는 1986년도 말 현재 국가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7032억 원이 증가된 13조 1937억 원입니다.

다섯째, 국가채무에 있어서는 1986년도 말 현재 국가채무 총액은 전년도 말보다 1조 2790억 원이 증가한 22조 8024억 원으로서 이 중 보증채무 7조 7748억 원을 제외한 순 국가채무는 전년도 말보다 7516억 원이 증가한 15조 276억 원입니다.

여섯째, 국유재산에 있어서는 1986년도 말 현재 국유재산 총액은 전년도 말보다 2조 6428억 원이 증가한 23조 363억 원으로서 행정재산 12조 5156억 원, 보존재산 2009억 원 그리고 잡종재산이 10조 3198억 원입니다.

끝으로 물품에 있어서는 1986년도 말 현재의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952억 원이 증가한

8472억 원입니다.

다음은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이 국가기관을 감사한 결과 지적된 위법 부당사항에 대하여 처리한 것은 총 2325건에 추가징수 또는 회수보전요구금액이 673억 5072만 원, 환급 또는 추가지급요구금액이 9813만 원, 징계처분 등을 요구한 인원은 168명이며, 처리종류별로는 처분요구가 1236건, 통보 1086건, 고발조치가 3건입니다.

감사결과 1986년도의 처분요구사항 1236건과 지난 연도의 미집행분 94건을 합한 1330건 중 1987년 9월 30일 현재 1159건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171건은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8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1986년도 예비비지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8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284억 원으로서 그중 지출결정액은 2203억 원이었으나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2133억 원이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봉급 및 공공요금 부족 50억 원, 재해대책비 199억 원, 급량비 16억 원 그리고 일반행정비가 1868억 원이었습니다. 한편 17개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35억 원이나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면밀히 심사를 한 결과 198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부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198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 3에 실음)

○**부의장 장성만** 그러면 먼저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접수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1988년도 예산안

(18시25분)

○**부의장 장성만** 의사일정 제46항 198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시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시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8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88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일자로 198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0월 25일까지 4일간 내년도 경제정책과 재정운용의 방향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정책질의를 했으며 이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각 소관 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했습니다.

10월 28일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3일간 종합적인 심의를 하였습니다.

소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의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조정규모와 내용에 관한 각 교섭단체 간의 이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함으로써 부득이 표결을

거쳐 소위원회의 안을 채택하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재석 40인 중 찬성 26인, 반대 14인으로 예산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88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안정 속의 복지증진에 두고 세입세출의 건전재정원칙을 견지하면서 농어촌 농어민과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재정투융자 및 보조금의 운용방식을 개선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198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보다 9.2% 증가한 17조 5419억 원이며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비롯한 16개 특별회계의 순계 규모는 금년도보다 2887억 원이 감소된 5조 6509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가 10조 8304억 원, 관세 2조 1812억 원, 방위세 2조 4376억 원, 교육세 4484억 원, 전매납부금 7423억 원, 세외수입 6008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3012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1조 7894억 원, 방위비 5조 7530억 원, 교육비 3조 6193억 원, 사회개발비 1조 3670억 원, 경제개발비 2조 5221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1조 5250억 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 3470억 원 및 재정투융자 지원 6191억 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한편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전매사업특별회계와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가 폐지되고 특허관리특별회계가 신설되며 자금관리특별회계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개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1조 4931억 원,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에서 352억 원을 그리고 계속비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총연부액 4855억 원 중 1988년도 연부액으로 122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공히 775억 1100만 원을 순 삭감함으로써 정부 제출 예산안의 규모를 17조 5419억 4000만 원에서 17조 4644억 2900만 원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유가인하에 따른 세입감소로 부가가치세에서 232억 7300만 원, 특별소비세에서 542억 3800만 원, 합계 775억 11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세입부문에서는 1373억 77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598억 6600만 원을 증액함으로써 775억 1100만 원을 순 삭감을 했습니다.

먼저 삭감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교육재정교부금 91억 4600만 원, 지방재정교부금 103억 8600만 원 등 합계 1373억 77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증액한 내역은 보훈보상금 153억 8200만 원, 수해지구 경지정리 40억 원, 국가관리 방조제 16억 원, 대·중규모 농업용수 개발 70억 원,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40억 원 등 합계 598억 66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용자계정 전출금 47억 5800만 원 합계 598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는 출자계정에서 156억 200만 원을 삭감한바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31억 200만 원과 철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5억 원을 각각 삭감하고 세출에서는 도로공사 출자 50억 원, 토지개발공사 출자 50억 원, 주식매각비용 51억 200만 원, 민자역사 출자 25억 원을 각각 삭감하고, 잠업진흥기금출연에 20억 원을 증액을 했으며, 용자계정에서는 147억 5800만 원을 증액한바 세입에 있어서는 체신예금 차입 300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7억 5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대신 석유사업기금 차입에서 200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4억 원, 대·중규모 농업용수 개발 30억 원, 농어촌 전화(電化) 4억 원, 농지구입자금 100억 원과 차입금 이자 9억 5800만 원을 각각 증액을 했습니다.

한편 철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전출금 25억 원을 민자역사 출자로 과목을 조정하였으며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일반도로사업에 100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는 1988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부분과 신 비목설치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주무장관인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동의를 있었음을 첨언을 해 드립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가 1988년도 예산안을 의결함에 있어 통일민주당에서는 3200억 원 삭감을, 신한국당에서는 3175억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198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88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88년도 예산안 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88년도 예산안

(정부)

(이상 3건 부록 3에 실음)

(장성만 부의장, 이재형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이재형 다음은 반대와 찬성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흥래 의원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 의원 통일민주당 소속 조흥래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통일민주당을 대표해서 1988년도 새해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우기 우리 통일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은, 특히 우리 예결위원들은 주어진 8일 동안에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전기획부, 총리실을 비롯해서 정부의 각 부처를 합하니까 모두 47개 부처나 되었습니다. 또 무려 참고자료만 하더라도 270여 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부처와 방대한 자료를 뒤적이면서 정부가 제출한 17조 5000여억 원에 달하는 이 예산을 나름대로 정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되겠다, 이번에는 예년과 달리 이 국회에서 변칙처리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또 우리가 세입이나 세출 면에 있어서 삭감안을 내어놓더라도 종래와는 다른 처지에서 수권정당의 의지와 면모를 보여 주어야 되겠다 또 반대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과 그 논리를 전개해야 되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심이 많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새해 예산안은 민주화시대의 전개를 염원하는 다수국민의 여망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또 반영을 해서 재정운용의 민주화 즉 재정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예산의 민주화 원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게 요청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예산은 그 성격상 정권을 담당할 정부여당의 정책이 투영되어 있는 다음 회계연도의 경제적 질서와 기획의 예견서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새해 예산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총선거결과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자 다시 말해서 집권정당이 바뀔 경우에 대비한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 전환기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할 때 내년 일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원칙적으로 금년도 87년도의 예산 수준에서 동결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50여 일 후에는 제13대 대통령선거를 거쳐서 내년 2월 25일 새로운 제6공화국이 출범하게 되면은 더우기 야당인 통일민주당이 집권경쟁에서 승리할 경우를 가상할 때 우리당은……

(웃음소리)

좀 있어요. 좀 들어요. 그런 스타일은 이제 우리 청산해야 됩니다. 좀 듣고 말이야 진지하게 토론하고 같이 고민하고 해야지……

우리 당은 당의 기본 국정운영에 입각해서 88년 예산을 새롭게 재편성 운용하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해 예산은 선거를 통해 새로이 탄생할 새 정부, 새 정권의 국정지표와 정책을 반영함이 없이 현 정권, 현 내각의 자의대로 확정 집행할 수는 결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통일민주당은 새해 예산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정치적 성격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민정당 정권이 제출하고 있는 신년도 예산안 자체가 지니고 있는 예산편성의 구조와 성격이 지극히 당리당략적인 부분이 큼을 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재정의 민주화와 예산민주주의의 원칙

을 수호하고자 명확하게 이를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 제출 새해 예산안은 이 예산안을 그동안 심의과정을 통해서 볼 때 제일 먼저 예산편성의 방법에 있어서 엄청난 변칙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편성법정화주의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편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예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바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가 불과 한 시간 전에 이 자리에서 자금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개정안을 처리한 이 개정안에 바탕을 두고 구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금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은 무엇보다도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출자 출연 등 종전에는 일반회계로 집행하던 사업을 대거 분리해 가지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라는 제2의 예산에 수용함으로써 이번 일반회계예산이 대폭 팽창되고 있음을 은폐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회계 규모 17조 5419억 원만으로도 87년 당초 예산 15조 5596억 원에 비해서 12.7%나 증가하고 있는 팽창예산이고 여기에 제2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이전되어서 출자 및 출연계정의 3897억 원을 합산하면은 총예산증가율은 무려 15.2%에 달해서 조만간 재정인플레이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는 데 우리는 그 충분한 내용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둘째로 새해 예산은 본예산만으로도 지난 5년간의 평균 증가율은 불과 11.1%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 예산은 이것을 훨씬 상회해서 정부발표에 내년도 GNP 경제성장률 10.7%보다도 2퍼센트 포인트 증가하고 있는 과다 팽창예산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동안 현 정권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크게 소외가 되었고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농어민과 도시영세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지역 간의 불균형 개발이라는 이러한 구실과 미명하에서 이제 바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들 분야에 전례 없는 편중배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 예산이 앞으로 있을 세 차례의 선거를 겨냥한 선거 선심용 예산임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전망이나 투자효율성에

대한 사전검토도 충분함이 없이 중요 역점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또 구실 밑에서 고속전철 타당성조사 사업이라든지, 고속도로 또 국도나 지방도의 건설사업비 등을 대폭 상향 조정해 가지고 정치적 공약사업으로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은 복지재정 복지예산이라는 이름 아래 예산을 정권연장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반재정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치예산 편성임을 다시 한번 지적치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13.6%의 공무원보급 인상만 하더라도 이 공무원 처우를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소위 한 자릿수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미명 아래 그동안 이를 억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속에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밀린 것을 대폭 인상하다 보니까 정부 스스로가 타 부문의 인상요인을 갖다가 자초하고 또 물가압력 등 경제에 주름살을 주는 조치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제로 새해 예산은 전례 없는 국민부담 가중 예산이라 하는 점입니다.

내년도의 세입예산을 보면 내국세만 하더라도 금년보다 무려 16.2%나 증액 책정되어 있고 방위세는 19.3%, 교육세는 11.6%나 증가 책정되어서 내년 중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무려 44만 6000원이나 되어서 금년도의 40만 4000원보다도 4만 2000원이나 부담을 가중시켜 놓고 있습니다. 87년 올해 내국세 증가율이 14.8%인데 이것은 경제성장률 13.8%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 여러 가지……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의 경제여건이 불리한 것으로 예상되는 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10.7%를 전제로 한 내국세 증가율이 16.2%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역시 지나치게 책정되어 있는 국민부담 압박형 예산이다 이렇게 또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속되어 왔던 노사분규로 인해 가지고 제조업의 생산이나 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고 또 내년에는 조세징수에 많은 장애요인들이 작용할 것으로 전망해 볼 때 세수확보는 극히 불안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82년 이후 방위세 증가율은 내국세의 신장률에 못 미치는 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88년도의 방위세 신장률이 13.9%

나 되고 있음은 국민에게 또한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째로 88년도 예산은 지나친 낙관기조의 예산이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내년도의 경제성장률을 10.7%, 물가는 3%, 환율은 달러당 790원,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50억 달러라는 전제하에서 내년도의 예산규모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이미 지적하다시피 노사분규의 여파, 신규투자 의욕의 감퇴, 해외시장 특히 미국시장의 전망이 지극히 불투명한 시점에서 새해의 경제성장률을 10% 이상으로 잡고 물가를 3% 이내로 억제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극히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정부출자기관인 KDI의 전망에 의하더라도 물가는 금년 중에 6% 이상 오를 전망이 있고 내년도 역시 금년의 높은 임금인상과 국제원자재값 앙등 등에 기인해서 5.6% 이상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적인 원화절상은 수출의 감소, 국제수지 흑자규모의 대폭적인 축소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할 때에 이번 정부예산 편성은 그 전제와 기초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지극히 불안정한 예산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내년도의 예산안은 전례 없는 비탄력적 경직예산으로써 가용재원을 극도로 압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방위비, 인건비, 지방재정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 등 손질하기 어려운 부문에 쓸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작년에 비하여 무려 16.2%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큰 문제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85년도에 64.4%, 86년도에 66.3%, 87년도에 66.4%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무려 68.6%로 늘어나서 해마다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은 이 또한 현 정부의 예산운용이 얼마나 방만하고 경직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실증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국방예산이 작년 대비 17.04%나 증가해서 여타 부문에 커다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 상대적으로 농어촌부문 투자나 사회개발복지예산이 또한 크게 위축되어서 우리 재정이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크게 상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년도 예산은 각급 선거에 대비한 정부여당의 정치적 당리당략적 성격을 다분히 지니고 있는 예산으로서 또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신설한 이중장부식 예산으로서 더구나 그 규모가 팽창되어서 국민부담의 가중과 통화증발, 자원낭비, 물가압박 등 용납될 수 없는 불건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민정당 소속 의원 여러분들이 각별하게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되는 86년 87년 예산안의 일방적.....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의장 이재형 다음은 찬성토론에 이용호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이용호 의원 민주정의당 소속 이용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988년도 예산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88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알뜰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각 분과위원회 그리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자력성장 기반의 구축, 지역 간 계층 간의 형평 제고, 농어촌 개발과 중소기업 육성, 국민복지 증진, 산업구조조정 등 경제 전체에 걸쳐서 매우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건설적인 의견을 행정부에 제시하고 또 토의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국회가 그동안 예산심의를 종결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즈음하여 본 의원은 새해 예산안이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농어촌 및 복지투자를 확충하여 증대되는 국민의 기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정수준의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등 국가재정이 담담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게 짜여져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몇 가지 소견을 밝혀 보고자 합니다.

첫째, 내년도 예산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팽창예산이라는 주장이 야당의원들로부터 제기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제기되는 비판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을 살펴보면 선진국 경제는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 계속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에 걸친 꾸준한 합리화 노력으로 대외경쟁력도 크게 향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크게 우려했던 노사분규도 근로자와 기업주의 자율적인 합의로 순조롭게 수습됨으로써 내년도의 경제성장률 10.7%는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재정운용을 살펴보면 예산규모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약간 상회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재정운용 방식하에서도 안정기조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산규모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팽창예산이 되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킨다는 논리의 비약은 이제 더 이상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것을 지양하고 예산의 재원조달 방식이 재정적자를 유발시키고 있는지 또는 정부지출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한 세입증대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점에서 본다면 내년도 예산은 무리 없는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증세조치나 재정적자 없이 정상적인 세입범위 내에서 편성된 건전균형예산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년도 예산이 선거를 앞둔 선심예산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달리합니다.

내년부터 농어촌의료보험 등 3대 복지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농어촌의 종합개발 및 부채경감대책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영세민 근로자 등 불우계층의 복지증진과 주택, 도로, 환경, 치수사업 등 국민생활의 향상과 직결되는 민생분야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 내년도 예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방향은 정부로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기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내년도 예산에서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공기업의 주식매각수입과 국민연금

등 공공자금을 투융자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개편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가지고 예산규모가 팽창되었다고 하거나 재정운용이 방만해진다는 비판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민간경제의 활력을 이용하여 우리 경제의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공기업의 민영화를 부정한다면 문제는 다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민영화를 새로운 경제여건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경제시책의 일환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이로 인해 생기는 주식매각수입을 소비적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하는 투융자운용방식의 개편은 재정능력 측면이나 국민부담 측면에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예산의 고질적인 문제로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재정경직도가 완화되고 있지 않아 재정운용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견해가 있었읍니다.

내년도 예산 중 방위비, 교부금, 인건비 등 소위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68.9%로 금년도 당초 예산의 66.9%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어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위비는 우리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우선적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취약한 지방재정의 지원을 위해 법률에 따라 일정률을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에 할당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공무원 처우개선 수준이 전체적으로는 13.6% 증가됨으로써 재정경직도를 높이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으나 현재의 공무원 보수수준을 보면 행정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공무원 처우개선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되며 처우개선 방법도 봉급인상 이외에 하위직의 보완적인 생계지원에도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경직성경비가 전체적인 재원배분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그 각각의 내용에 있어서 효율을 극대화하고 경제적 효과가 크게 거양되도록 예산편성과 운용을 합리화하는 한편 국가재정의 성장을 지원 및 복지기능을 적절히 신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재정의 경직도를 완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중요한 정책문제에 대한 본 의원의 소신을 피력하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찬성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신속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심의과정에서 여과된 국민의 소리를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복지사회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재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가 그동안 꾸준히 다져 온 안정기반과 강화된 경제체질을 바탕으로 호전된 대내외 여건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성장능력을 더욱 제고시키고 선진사회 진입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순조롭게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단합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여야의 구별 없는 공동의 참여와 긴밀한 협조가 요청된다 하겠읍니다.

이런 시각에서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능력과 형평을 바탕으로 한 경제 선진화와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다가서는 과정에서 온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나름대로 포괄하여 국민적인 합의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형 다음은 서종열 의원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열 의원 신민당 소속 서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신민당이 신년도 예산 중에서 3175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내놓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중에 반도 각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섰읍니다. 정말 국민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투쟁을 하고 또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정부예산은 국가의 존립 발전과 국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정치적 수단이므로 우리 국회는 마땅히 이 예산안을 여야 할 것 없이 완전 합의하에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시키는 것이 소망스러운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민당은 이 새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여당과 합의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 문제점을 국민 앞에 밝

하면서 이 예산안은 반드시 수정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예산은 그때그때의 정치적 경제적인 배경에 따라서는 그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적자예산까지도 고려될 수 있고 또한 필요하다 하겠읍니다. 그러나 상황이 정상적일 경우 우리는 마땅히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서 예산규모는 적정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재정지표를 보면 GNP 성장률은 7.5%이고 GNP 디플레이터는 3으로 잡고 새해 성장률은 10.7%로 추정하면서도 예산규모는 GNP 성장률 10.7%보다 2%가 웃도는 12.7%나 늘려 편성하였으므로 이 예산은 국민경제에 크나큰 부담을 지우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새해 예산이 원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그 첫째는 지금 우리나라는 6·29를 기점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는 불투명한 전환정국, 노사분규의 여독, 3저 퇴조, 물가 및 사회불안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투자분위기의 냉각 등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이와 같은 부정적 요인이 역력함에도 불구하고 것처럼 GNP 성장률을 10.7%나 과다하게 책정한데다 예산규모는 이보다 더 늘려 잡음으로써 GNP 성장률과 예산규모 사이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당은 3175억 원 상당은 반드시 삭감되어야만 그 규모가 적정한 건전균형예산이 될 수 있겠으나 정부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세입세출예산에서 각각 1300억 원 삭감할 것을 고집하고 있으므로 우리 당이 반대하는 것은 사리상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 당이 가장 문제시하는 것은 이처럼 예산규모가 과다하게 늘어남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 부담이 모두 늘어서 가계와 기업을 크게 압박하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부문에서 경제개발의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개발비를 보면 전체 세출예산 17조 5419억 원 중 이 경제개발비는 7분의 1을 약간 넘는 2조 5221억 원에 불과한데다 이 경제개발비는 원래의 2조 8692억 원보다 도리어 3470억 원이나 줄어들었으므로 전체 예산은 12.7%나 덜 드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개발비는 반대로

12.09% 줄어들었습니다.

경제개발비 중에서도 90.22%에서 32.47%나 엄청나게 줄어든 것이 농업소득 지원과 식량생산부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농업이 되어서 농업간의 불균형현상이 크게 문제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농업부분을 이처럼 소홀히 한 것은 우리 당이 이 새해 예산안을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 당은 새해 예산 중 3175억 원을 세입세출예산에서 각각 삭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수산부분의 예산을 올해 수준인 1조 원대 이상으로 늘려 조정하지 않는 한 우리 당은 이 새해 예산안을 반대한다는 것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형 다음은 함종한 의원 반대토론 해주세요.

○함종한 의원 한국국민당 함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2대 국회의 모양을 가장 나쁘게 일그러뜨린 때는 예산심의 때였던 것 같습니다. 86·87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는 이 자리에서 여야가 함께 이렇게 반대토론 찬성토론도 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두렵거나 부끄러울 때는 얼굴이 뜨거워 집니다. 12대 국회 초기에는 얼굴만 뜨겁더니 중반기에 들어가면서 뒤통수까지 뜨겁고 이제 국회를 마감하는 오늘에 와서는 온몸이 뜨거워지는 부끄러움과 초라함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나라살림 규모에 오랜 시간을 지체하면서도 여야가 끝내 합의예산을 내놓지 못하고 한국국민당을 대표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예결위 전체회의와 각 분과위를 통해 심의한 예산안은 우선 소비성, 비투자성, 선거성 팽창예산이었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특히 88년도 예산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까지 합쳐 실제 예산증가율이 무려 15.2%로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경상가격 12.7%와 6차 5개년계획 기간 중 연평균 재정증가율 8%에 대비하면 어마어마한 팽창예산이며, 내년도 물가상승률 3.2%는 선거 이후 미국의 수입개방 원화절상 등의 경제

압력과 선거 등으로 풀려날 과잉통화량 및 인상된 각종 임금 등을 예견할 때 지나친 낙관입니다.

지출역점분야도 전년 대비 서민주택이 100.7%, 기능인력 양성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63.6%, 국민복지 증진에 38.6% 등으로 디 에프레이의 정치적 경기변동학설에 걸맞는 선거관련성이 짙은 분야에 집중된 선심예산이었으며 경직성경비도 87년 세출의 64.8%에서 88년 69%로 편성된 비투자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당은 88년 일반회계예산의 증가율과 예산규모를 내년도에 예상되는 경제성장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 조정 세입·세출규모에서 공히 3000억 원을 삭감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즉 세입은 이미 재무위 예심에서 삭감·조정한 유가인하에 따른 관세감소액 775억 원과 나머지 2225억 원은 각종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자의 기초공제를 포함한 인적공제액을 인상 조정하여 소득세 원천분 1조 4709억 원 중에서 삭감·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세출에서는 각 분과의 심사결과 소수의견으로 삭감기로 한 2305억 원을 포함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3000억 원을 삭감,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했습니다.

이 같은 우리 국민당의 합리적인 삭감조정안이 다수 여당에 의해 반영되지 못하고 1373억 7700만 원만 삭감 세출증액을 제하면 실제로는 775억 1100만 원만 삭감하여 우리 국민당은 부득이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우리 당의 합리적인 삭감조정안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차기 대통령을 돕는 의미에서도 적극 찬동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고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형 이상으로 토론을 마칩니다.

그럼 1988년도 예산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으세요.

다음에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45인 중 가 123인, 부 22인으로 198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로부터 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무총리를 소개합니다.

○국무총리 김정렬 국무총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수주일 동안 주야로 예산안을 비롯하여 이에 수반되는 법안들을 심의하시어 오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행정부를 대표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증대하는 국민욕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만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들을 유념하여 아끼고 절약하면서 최대의 효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로서는 내년도의 순조로운 평화적 정부이양과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아직도 14건의 의사일정이 남았습니다. 마는 그중 동의안이 많아서 그것은 한테 묶어서 처리하게 되므로 일곱 분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줌으로써 처리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처리를 하고 또 내일 오전에 11건의 나머지 긴급한 안건을 처리해야겠으니까 고단하시지만 참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47. 국제투자보증기구설립협약 비준동의안(정부 제출)

(19시30분)

○의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47항 국제투자보증기구설립협약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현홍주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홍주 의원** 외무위원회 현홍주 의원입니다.

국제투자보증기구설립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은 지난 9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9월 21일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외무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개최된 제4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불안요인 때문에 야기되는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보증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재원이전을 위한 해외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협약을 전문과 본문 67개조 부속서 및 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 민간투자에 따르는 비상업적 위험의 보증, 공동보험 및 재보험의 제공, 투자기회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정보교환, 투자분쟁의 원만한 해결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의 비준동의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장차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용자대상으로부터 졸업하게 될 것에 대비해서 외자조달원의 다변화가 필요한데 이 기구에의 가입을 통해서 외국인투자보호라는 정책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이며, 개방경제시책의 추진과 더불어서 각국의 무역장벽 타개와 자원확보를 위해서 해외투자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고 특히 비교열위산업의 해외이전 촉진에 따라서 우리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 기구에 가입하는 경우에 개도국에서 야기될 비상업적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진출이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수출보험제도에 의해서 부보(付保)되지 못하는 위험성 높은 해외투자를 이 기구에 부보시킬 수 있으며 동 기구의 재보험을 통해서 위험을 분산시켜서 국내 수출보험제를 보완 및 강화할 수가 있고 이 기구와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해외투자에 관한 각종 정보 및 국별 위험에 관한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해외투자보험에 대한 정보교환 및 선진보험기법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외무위원회에서는 위에 말씀드린 협약 비준동의안을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외무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국제투자보증기구설립협약 비준동의안 심사 보고서

(외무위원회)

국제투자보증기구설립협약 비준동의안

(정부)

(이상 2건 부록 4에 실음)
.....

(이재형 의장, 장성만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장성만** 그러면 국제투자보증기구설립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의의가 없습니까?

(「의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개정의정서 체결에 대한 동의안(정부 제출)

(19시34분)

○**부의장 장성만** 의사일정 제48항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개정의정서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유성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환 의원** 외무위원회 유성환 의원입니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개정의정서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1일 제4차 외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동의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의 목적은 범세계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체계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체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국제무역의 촉진, 국제무역통계의 용이한 수집 비교 및 분석, 무역서류의 표준화 및 자료 전달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체약 당사국은 일정한 예외를 조건으로 하여 자국의 관세 및 통계품목분류표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일치시켜야 하며,

둘째, 각 체약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통일체계위원회를 설치하며,

셋째, 본 협약의 해석 또는 통용에 관한 체약 당사국 간의 분쟁이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통일체계위원회에 회부되며 동 위원회가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관세협력이사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협약 가입의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아국이 주요 교역상대국과 동일한 상품분류제도를 사용하게 되어 대외무역거래를 편리하게 하고 수출을 촉진하게 되며 또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제도를 사용함으로써 수출입무역통계 및 제반 경제통계의 국제비교가 용이하고 이에 근거한 경제정책 수립 시행을 가능하게 하며 그 외에 본 협약 체약국의 지위를 가짐으로써 일반 특혜관세제도 수출자율규제 등과 관련하여 무역상대국 또는 관세협력이사회에서의 상품분류가 아국에 유리하도록 하는 교섭을 가능하게 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충분히 심사한 결과 이 같은 가입효과를 지니고 있는 본 협약 가입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 조)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개정의정서 체결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외무위원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개정의정서 체결에 대한 동의안

(정부)

(이상 2건 부록 4에 실음)

.....
○부의장 장성만 그러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개정의정서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정부 제출)
(19시39분)

○부의장 장성만 의사일정 제49항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배성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동 의원 재무위원회 배성동 의원입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87년 10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1988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7개 부문 10개 사업에 소요되는 외자 4억 1500만 불의 공공차관을 세계은행, 아세아개발은행 그리고 기타 경제협력기구로부터 도입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외자도입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과학교육 및 산업기술 지원능력 확충, 전기재료 국산화 개발 등의 과학기술 발전사업에 1600만 불,

둘째, 각종 실험 및 연구용 다목적 연구로 건설을 위하여 1600만 불,

셋째, 대전시 일원의 생활용수 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청호 계통 3차 상수도확장사업에 1200만 불,

넷째, 진주·수원시의 하수처리장 건설에 소요되는 외자도입에 2100만 불,

다섯째, 도로포장 확장 및 유지 보수를 위한 도로부문 사업에 2억 불,

여섯째, 고속도로 건설지원사업을 위하여 1억 불,

일곱째,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용 자금지원을 위하여 5000만 불의 공공차관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1987년 10월 22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진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동의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소위원회의 신중한 심의결과를 토대로 하여 1987년 10월 29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참 조)
 -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무위원회)
 -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정부)
 - (이상 2건 부록 4에 실음)
-

○부의장 장성만 그러면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0. 1988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정부 제출)
- 51. 1988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정부 제출)
- 52. 1988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정부 제출)
- 53. 1988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정부 제출)
- 54. 1988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정부 제출)
- 55. 1988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 (정부 제출)

(19시42분)

○부의장 장성만 의사일정 제50항 1988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51항 1988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52항 1988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53항 1988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54항 1988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55항 1988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 이상 6건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최운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지 의원 재무위원회 최운지 의원입니다.

1988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및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 등 6개 국채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국채발행동의안의 총 한도액은 3조 3750억 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988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은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해외부문에서 증발되는 통화를 흡수하는 한편 외국환 수급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을 2조 원, 발행금리는 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에 의하여 소화하는 것입니다.

외국환 수급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을 2조 원, 발행금리는 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에 의하여 소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1988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은 국민투자기금이 중화학공업 등 정책산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을 4000억 원,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 이상, 상환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1988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은 동 기금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을 600억 원, 발행금리는 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넷째, 1988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은 국민주택기금이 국민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은 5000억 원, 발행금리는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준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하여 각종 인허가와 등기 및 등록 시에 첨가소화하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한도액이 1000억 원, 발행금리는 연 5% 이하로 하고 상환기간은 20년으로 하여 투기지구 내의 민영주택 분양 시 소화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1988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은 국민주택기금이 국민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첨가소화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이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행한도액은 2000억 원, 발행금리는 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1988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은 농어촌지역개발기금이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행한도액은 1150억 원, 발행금리는 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재무위원회에서는 1987년 10월 22일 제6차 위원회에 이들 동의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서 동의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소위원회에서 신중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1987년 10월 29일 제10차 위원회에서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하여는 내년도 주택경기 전망과 관련하여 발행한도액 5000억 원에서 500억 원을 삭감 4500억 원으로 하기로 하고, 기타 5개 동의안은 정부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서는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재무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 (참 조)
- 1988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 1988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 1988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 1988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 1988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심사

보고서
1988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재무위원회)

- 1988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 1988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 1988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
- 1988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 1988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 1988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

(이상 6건 정부)

(이상 12건 부록 4에 실음)

.....

○부위원장 장성만 그러면 1988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88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8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8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8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8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56. 1988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제출)
 - 57. 1988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제출)
 - 58. 1988년도발행 환경관리공단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제출)

59. 1988년도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제출)

(19시52분)

○**부의장 장성만** 의사일정 제56항 1988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57항 1988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58항 1988년도발행 환경관리공단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59항 1988년도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문병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하 의원** 재무위원회 문병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88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8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8년도발행 환경관리공단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및 1988년도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들은 1987년 10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제6차 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과정과 동의안심사소위원회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후 10월 29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 보증동의안들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 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산업금융채권은 원화표시 채권과 외화표시채권의 2종으로 발행할 예정이며 원화표시 산업금융채권 발행한도액은 1조 2000억 원,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7년 이내로 하며 매출 또는 인수에 의하여 소화할 것 이고, 외화표시 산업금융채권의 발행한도액은 미 화 4억 불 상당액, 발행금리는 고정금리로 하는 경우 12% 이하, 변동금리로 하는 경우 기준금리 +0.375% 이하, 상환기간은 30년 이내로 하여 해 외금융시장에서 공모 또는 사모에 의하여 발행될 것입니다.

둘째, 비료계정의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한국은행차입금은 한도액 6200억 원, 차입금리는 연 5% 이하,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하려는 것입니다.

세째, 수도권 생활쓰레기 매립에 사용될 해안 간척지 매입보상비 중 부족자금 조달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이 발행하는 환경관리공단채권은 발행한도액 400억 원,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에 의하여 소화하게 될 것입니다.

네째, 기업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기술개발금융 채권은 발행한도액 100억 원, 발행금리는 실세금 리 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으로 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1988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8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 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8년도발행 환경관리공단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8년도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재무위원회)

1988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8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 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8년도발행 환경관리공단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8년도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4건 정부)

(이상 8건 부록 4에 실음)
.....

○**부의장 장성만** 그러면 먼저 1988년도 산업금 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

다음은 1988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상 2건 부록 4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8년도발행 환경관리공단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8년도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0. 1988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정부 제출)

(19시57분)

○부의장 장성만 의사일정 제60항 1988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김두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중 의원 상공위원회 김두중 의원입니다.

1988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를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지난해보다 7500억 원이 감소된 1조 6000억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88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무위원회)

1988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부의장 장성만 그러면 1988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9시58분)

○부의장 장성만 내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회의를 마치고 속히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휴회결의를 먼저 해 두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장성만 제1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9분 산회)

(—·— 부분은 국회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 의원 수(272인)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김정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정인용
내무부장관	이상희
재무부장관	사공일
법무부장관	정해창
국방부장관	정호용
문교부장관	서명원
체육부장관	조상호
농림수산부장관	김주호
상공부장관	나웅배
동력자원부장관	최창락
보건사회부장관	이해원
노동부장관	이헌기
교통부장관	차규현

체신부장관 오 명
 총무처장관 장 기 오
 정무장관(제1) 이 중 율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박 쌍 룡
 법무부차관 한 영 석
 상공부차관 홍 성 좌
 건설부차관 이 형 구
 보건사회부차관 최 수 일
 노동부차관 한 진 희
 문화공보부차관 최 창 윤
 과학기술처차관 권 원 기
 국토통일원차관 김 동 섭
 국가보훈처장 김 근 수

○정부 측 참석자

감사원장 황 영 시

【보고사항】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문교공보	김정남	민주정의당

(10월 19일 자)

○간사 개선

위원회	전임간사	신임간사	교섭단체
예산결산특별	김종인	이용호	민주정의당

(10월 19일 자)

○특별위원 변경

위원회	구 위원	신 위원	교섭단체
예산결산특별	김종인	이용호	민주정의당

(10월 19일 자)

위원회	구 위원	신 위원	교섭단체
예산결산특별	김일윤	신민선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10월 22일 자)

위원회	구 위원	신 위원	교섭단체
예산결산특별	유성환	김정길	통일민주당

(10월 24일 자)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 위원회	신 위원회	교섭단체
이봉모	외무	내무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10월 19일 자)

위원회	구 위원	신 위원	교섭단체
국회운영	강경식 (건설)	손태곤 (재무)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10월 20일 자)

위원명	구 위원회	신 위원회	교섭단체
지연태	외무	보건사회	민주정의당
김태수	농수산	법제사법	민주정의당
이병직	보건사회	외무	민주정의당

(10월 28일 자)

○의안 제출

광주직할시와전라남도의관할지역변경및송정시·
 광산군폐지에관한법률안

(10월 19일 고귀남 의원 이영일 의원 외 61인 발의)

발의자 고귀남 이영일
 찬성자 곽정출 구용상 김기배
 김 식 김영구 김재호
 김정균 김정례 김종기
 김종인 김 집 김태호
 김현욱 김현자 김형효
 유경현 박규식 박익주
 박준병 배명국 배성동
 봉두완 徐廷華 송용식
 신상식 심정구 안병규
 안영화 염길정 이대순
 이상재 이성열 이용호
 이재우 이철우 임영득
 전병우 전종천 정 남
 정선호 정순덕 정시채
 정종택 정창화 정현경
 정휘동 조기상 조상래
 조상현 조일문 조중호
 지갑중 지연태 최명현
 최영철 최창규 허청일
 현경대 홍성우 홍우준
 홍종욱

국민투표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0일 정재원 의원 외 20인 발의)

발의자 정재원
 찬성자 김병수 김옥선 김한수
 류갑중 유한열 박해충
 서종열 신경설 신도환
 신병열 신달수 이건일
 이민우 이철승 이태구

이택돈 이택희 임종기
최운지 한석봉

10월 2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0일 정부 제출)

10월 2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한국식품개발연구원법안

(10월 20일 정부 제출)

10월 20일 농수산위원회에 회부

전화세법 폐지법률안

(10월 21일 한석봉 의원 외 30인 발의)

발의자 한석봉

찬성자 김병수 김한수 류갑종
유한열 박해충 서종열
신경설 신도환 신병열
신달수 이건일 이민우
이철승 이태구 이택돈
이택희 임종기 정재원
최운지 황병우 김규원
문병하 이봉모 정시봉
최용안 함종한 황대봉
고한준 이길범 정재문

10월 21일 재무위원회에 회부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1일 박성태 의원 김집 의원 외 25인 발의)

발의자 박성태 김 집

찬성자 강창희 권중동 김 식
김영정 김용대 김장숙
김중위 김태수 류상호
박권흠 박준병 배명국
안병규 오한구 이대순
이성호 이용호 이철우
전종천 정휘동 조기상
조남조 조종호 홍종욱
홍희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1일 박성태 의원 김집 의원 외 24인 발의)

발의자 박성태 김 집

찬성자 강경식(민주정의당) 강창희
고 건 권중동 김두중
김 식 김영정 김장숙
김재호 김중위 남재두
박재홍 박준병 徐廷和

심명보 양창식 오한구
우병규 이병직 이상희

이찬혁 정동성 조경목

이상 2건 10월 21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1일 김정수 의원 김완태 의원 외 68인 발의)

발의자 김정수 김완태

찬성자 강삼재 고재청 권오태
김동규 김동영 김동욱
김동주 김득수 김봉욱
김봉조 김봉호 김성식
김수환 김영배 김용오
김정길 김태룡 김현규
김현수 김형경 김형광
김형래 노승환 류제연
유준상 명화섭 목요상
문정수 박관용 박 실
박왕식 박용만 박 일
박종률 박찬중 반형식
서석재 송원영 송천영
송현섭 신기하 신순범
심완구 안동선 유성환
윤영탁 이상민 이영권
이영준 이용희 이재근
이재옥 이중재 이진연
이 철 장기욱 정상구
조병봉 조순형 조영수
조종익 조홍래 최락도
최 훈 허경구 허경만
홍사덕 황낙주

10월 22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1일 류홍수 의원 강경식(민주정의당) 의원
곽정출 의원 이상희 의원 장성만 의원
김숙현 의원 심정구 의원 홍희표 의원 진치범
의원 외 26인 발의)

발의자 류홍수 강경식(민주정의당)

곽정출 이상희 장성만
김숙현 심정구 홍희표
진치범
찬성자 강창희 권익현 권중동
김상구 김 집 김영선
김영정 김장숙 김종호

남재희 류근환 박준병
 심명보 왕상은 윤길중
 이상익 이세기 이춘구
 이한동 정석모 정현경
 지갑중 진의중 채문식
 천영성 최상진

10월 21일 교통체신위원회에 회부

해난심판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1일 정부 제출)

10월 22일 교통체신위원회에 회부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10월 22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0월 23일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3일 이택돈 의원 한석봉 의원 외 19인 발의)

발의자 이택돈 한석봉
 찬성자 김병수 김옥선 김한수
 류갑중 유한열 박해충
 서종열 신경설 신도환
 신병열 신달수 이건일
 이민우 이철승 이태구
 이택희 임종기 정재원
 최운지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3일 이택돈 의원 한석봉 의원 외 19인 발의)

발의자 이택돈 한석봉
 찬성자 김병수 김옥선 김한수
 류갑중 유한열 박해충
 서종열 신경설 신도환
 신병열 신달수 이건일
 이민우 이철승 이태구
 이택희 임종기 정재원
 최운지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3일 이택돈 의원 한석봉 의원 외 19인 발의)

발의자 이택돈 한석봉
 찬성자 김병수 김옥선 김한수
 류갑중 유한열 박해충
 서종열 신경설 신도환
 신병열 신달수 이건일
 이민우 이철승 이태구

이택희 임종기 정재원
 최운지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3일 이택돈 의원 한석봉 의원 외 19인 발의)

발의자 이택돈 한석봉
 찬성자 김병수 김옥선 김한수
 류갑중 유한열 박해충
 서종열 신경설 신도환
 신병열 신달수 이건일
 이민우 이철승 이태구
 이택희 임종기 정재원
 최운지

이상 4건 10월 24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4일 한석봉 의원 서종열 의원 외 19인 발의)

발의자 한석봉 서종열
 찬성자 김병수 김옥선 김한수
 류갑중 유한열 박해충
 신경설 신도환 신병열
 신달수 이건일 이민우
 이철승 이태구 이택돈
 이택희 임종기 정재원
 최운지

10월 26일 교통체신위원회에 회부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6일 한석봉 의원 외 20인 발의)

발의자 한석봉
 찬성자 김병수 김한수 류갑중
 유한열 박해충 서종열
 신경설 신도환 신병열
 신달수 이건일 이민우
 이철승 이태구 이택돈
 이택희 임종기 정재원
 최운지 황병우

10월 28일 재무위원회에 회부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안

(10월 26일 이종찬 의원 최창규 의원 김영정 의원 홍종욱 의원 조일문 의원 김형효 의원 남재희 의원 조남조 의원 외 57인 발의)

발의자 이종찬 최창규 김영정
 홍종욱 조일문 김형효
 남재희 조남조

찬성자 곽정출 구용상 권익현
 권정달 김용대 김정남
 김정례 김종기 김종호
 김 집 김태수 김태호
 김학준 김현욱 김현자
 노태우 류근환 류상호
 박경석 박권흠 박동진
 박익주 배명국 봉두완
 안병규 안영화 오세응
 유학성 이대순 이민섭
 이상재 이성호 이세기
 이영일 이용호 이철우
 이한동 전병우 전종천
 정 남 정종택 정현경
 정휘동 조기상 조상래
 조상현 조종호 지갑중
 지연태 채문식 천영성
 최병렬 한양순 허청일
 현홍주 홍성우 홍우준

정시채 정종택 정현경
 정호근 조상래 조상현
 조일문 지갑중 지연태
 채문식 천영성 최병렬
 최영덕 최창규 한양순
 허청일 현홍주 홍우준
 강삼재 고재청 권오태
 김동규 김동영 김동욱
 김동주 김득수 김봉욱
 김봉조 김봉호 김성식
 김수한 김영배 김완태
 김용오 김정길 김정수
 김태룡 김현수 김형경
 김형광 김형래 노승환
 류제연 유준상 명화섭
 목요상 문정수 박관용
 박 실 박왕식 박용만
 박 일 박종률 박찬중
 반형식 서석재 송원영
 송친영 송현섭 신기하
 신순범 심완구 안동선
 유성환 윤영탁 이상민
 이영권 이영준 이용희
 이재근 이재옥 이중재
 이진연 이 철 장기욱
 정상구 조병봉 조순형
 조영수 조종익 조홍래
 최락도 최 훈 허경구
 허경만 홍사덕 황낙주
 김병수 김옥선 김한수
 류갑중 유한열 박해충
 서종열 신경설 신도환
 신달수 이건일 이민우
 이철승 이태구 이택돈
 이택희 임종기 최운지
 한석봉 김영생 김일윤
 문병하 이만섭 이봉모
 정시봉 최용안

10월 28일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10월 28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0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10월 29일 국회운영위원장 이대순 제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0월 29일 이대순 의원 김현규 의원 정재원 의원 양정규 의원 외 152인 제출)

발의자 이대순 김현규 정재원

양정규

찬성자 고귀남 곽정출 구용상

권영우 권익현 권정달

김용대 김정균 김정례

김종기 김종호 김태호

김학준 김현욱 김현자

김형효 남재희 노태우

류근환 류홍수 박권흠

박동진 박익주 안갑준

안영화 오세응 유학성

이민섭 이범준 이상재

이세기 이영일 이종찬

이한동 임방현 장성만

전병우 정 남 정동성

혼인에관한특례법안(대안)

(10월 29일 법제사법위원장 나석호 제출)

청소년육성법안(대안)

(10월 29일 문교공보위원장 이영일 제출)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노사협의회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 10월 29일 보건사회위원장 박준병 제출)

대통령선거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10월 30일 내무위원장 전병우 제출)

○휴회의 건

(10월 30일 의장 제의)

11월 2일 (6일간)
11월 7일

○의안 심사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

(9월 25일 정부 제출)

(10월 19일 각 상임위원장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10월 20일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198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월 25일 정부 제출)

(10월 19일 국회운영위원장 이대순, 법제사법위원장 나석호, 외무위원장 김현욱, 내무위원장 전병우, 재무위원장 신상식, 경제과학위원장 염길정, 문교공보위원장 이영일, 농수산위원장 안병규, 상공위원장 정동성, 보건사회위원장 박준병, 교통체신위원장 김상구, 건설위원장 권영우로부터 각각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10월 20일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1986년도 세입세출결산

198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9월 25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0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시채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1988년도 예산안

(9월 30일 정부 제출)

(10월 21일 국회운영위원장 이대순, 법제사법위원장 나석호, 외무위원장 김현욱, 내무위원장 전병우, 재무위원장 신상식, 경제과학위원장 염길정, 국방위원장 천영성, 문교공보위원장 이영일, 농수산위원장 안병규, 상공위원장 정동성, 보건사회위원장 박준병, 교통체신위원장 김상구, 건설위원장 권영우로부터 각각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10월 22일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1988년도 예산안

(9월 30일 정부 제출)

(10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시채 심사 보고)

수정 의결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1986년 11월 22일 정부 제출)

(10월 30일 보건사회위원장 박준병 보고)

의료기사법 중 개정법률안

(1986년 11월 27일 정부 제출)

(10월 29일 보건사회위원장 박준병 보고)

이상 2건 수정 의결

해양개발기본법안

(1986년 12월 17일 이상희 의원 김현욱 의원 류홍수 의원 정현경 의원 외 49인 발의)

(10월 30일 경제과학위원장 염길정 보고)

수정 의결

범죄피해자구조법안

(9월 21일 현경대 의원 임두빈 의원 외 32인 발의)

(10월 29일 법제사법위원장 나석호 보고)

수정 의결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

(10월 16일 현경대 의원 외 29인 발의)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형사보상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10월 28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10월 29일 법제사법위원장 나석호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국제투자보증기구설립협약 비준동의안

(9월 17일 정부 제출)

(10월 26일 외무위원장 김현욱 보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개정의정서 체결에 대한 동의안

(10월 2일 정부 제출)

(10월 26일 외무위원장 김현욱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이상 2건 8월 1일 정부 제출)

물품관리법 개정법률안

(9월 28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10월 29일 재무위원장 신상식 보고)

이상 3건 수정 의결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9월 28일 정부 제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자금관리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 10월 10일 정부 제출)

1988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1988년도 외환평형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

1988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발행동의안

1988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 발행동의안

1988년도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

1988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동의 및 동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8년도발행 환경관리공단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8년도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8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

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9건 10월 13일 정부 제출)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10월 14일 정부 제출)

(이상 13건 재무위원장 신상식 보고)

이상 13건 원안대로 의결

1988년도 국민주택채권 발행동의안

(10월 13일 정부 제출)

(10월 29일 재무위원장 신상식 보고)

수정 의결

소프트웨어개발촉진에관한법률안

(10월 16일 박종문 의원 이진 의원 김문기 의원 외 37인 발의)

(10월 30일 경제과학위원장 염길정 보고)

원안대로 의결

도서관법 개정법률안

(10월 5일 김현자 의원 조상현 의원 조일문 의원 진치범 의원 김형효 의원 한양순 의원 박성태 의원 홍종욱 의원 외 30인 발의)

전통사찰보존법안

(10월 16일 김집 의원 홍종욱 의원 외 25인 발의)

(10월 29일 문교공보위원장 이영일 보고)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안

(10월 26일 이종찬 의원 최창규 의원 김영정 의원 홍종욱 의원 조일문 의원 김형효 의원 남재희 의원 조남조 의원 외 57인 발의)

(이상 3건 10월 29일 문교공보위원장 이영일 보고)

이상 3건 수정 의결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16일 조상현 의원 외 37인 발의)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10월 22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10월 29일 문교공보위원장 이영일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안

(10월 20일 정부 제출)

(10월 29일 농수산위원장 안병규 보고)

원안대로 의결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0일 박성태 의원 김집 의원 외 24인 발의)

(10월 26일 보건사회위원장 박준병 보고)

원안대로 의결

검역법 중 개정법률안

(9월 1일 정부 제출)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9월 24일 정부 제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안

(9월 28일 정부 제출)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16일 정부 제출)

(이상 4건 10월 29일 보건사회위원장 박준병 보고)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남녀고용평등법안

(10월 5일 김영정 의원 김장숙 의원 외 44인 발의)

(10월 26일 보건사회위원장 박준병 보고)

수정 의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

(9월 9일 정부 제출)

환경오염방지사업단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12일 정부 제출)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0일 박성태 의원 김집 의원 외 25인 발의)

(이상 3건 10월 29일 보건사회위원장 박준병

보고)

이상 3건 수정 의결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1985년 11월 13일 김영배 의원 외 101인 발의)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1985년 12월 13일 김일윤 의원 외 20인 발의)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5일 박규식 의원 박성태 의원 외 143인 발의)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5일 김영배 의원 외 69인 발의)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3일 이택돈 의원 한석봉 의원 외 19인 발의)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9월 3일 정시봉 의원 외 19인 발의)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5일 이찬혁 의원 권중동 의원 외 143인 발의)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5일 김완태 의원 외 69인 발의)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3일 이택돈 의원 한석봉 의원 외 19인 발의)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9월 3일 정시봉 의원 외 19인 발의)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5일 우병규 의원 임두빈 의원 외 143인 발의)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5일 김완태 의원 외 69인 발의)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3일 이택돈 의원 한석봉 의원 외 19인 발의)

노사협의회법 중 개정법률안

(1985년 11월 13일 김득수 의원 외 101인 발의)

노사협의회법 중 개정법률안

(1985년 12월 13일 함중환 의원 외 20인 발의)

노사협의회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5일 김기배 의원 심정구 의원 김중위 의원 외 142인 발의)

노사협의회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5일 박종률 의원 외 69인 발의)

(이상 17건 10월 29일 보건사회위원장 박준병 보고)

이상 1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

청소년육성법안

(1986년 12월 17일 김정례 의원 안병규 의원 안갑준 의원 조일문 의원 한양순 의원 외 47인 발의)

(10월 29일 문교공보위원장 이영일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기로 의결

혼인에관한특례법안

(10월 13일 이철 의원 외 69인 발의)

혼인에관한특례법안

(10월 15일 한양순 의원 김현자 의원 김영정 의원 김장숙 의원 양경자 의원 외 17인 발의)

(이상 2건 10월 29일 법제사법위원장 나석호 보고)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기로 의결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9월 25일 정부 제출)

(10월 30일 내무위원장 전병우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기로 의결

1988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10월 13일 정부 제출)

(10월 28일 상공위원장 정동성 보고)

대체에너지의개발촉진법안

(10월 16일 이상희 의원 심명보 의원 이종찬 의원 우병규 의원 정동성 의원 김두중 의원 외 36인 발의)

(10월 29일 상공위원장 정동성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안

(10월 16일 이상희 의원 강경식 의원(민주정의당) 정동성 의원 徐廷和 의원 이성열 의원 조경목 의원 진치범 의원 외 40인 발의)

(10월 29일 상공위원장 정동성 보고)

수정 의결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10월 29일 국회운영위원장 이대순 제출)

(10월 29일 국회운영위원장 이대순 보고)

원안대로 의결

광주직할시와전라남도의관할구역변경및송정시·광산군폐지에관한법률안

(10월 19일 고귀남 의원 이영일 의원 외 61인 발의)

대통령선거법안

(10월 29일 내무위원장 전병우 제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법률안

(10월 30일 내무위원장 전병우 제출)

(이상 3건 10월 30일 내무위원장 전병우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의안 철회

국가원로자문회의법안

(10월 28일 조상래 의원 외 62인 발의)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10월 28일 정종택 의원 외 68인 발의)

이상 2건 10월 30일 발의자 철회요구

○청원 제출

충남 서산군의 분군에 관한 청원

(10월 28일 충남 서산군 태안읍 남문리 259 백성기 외 1206인으로부터 김현욱 의원의 소개로 제출)

요지

1. 충남 서산군 태안반도의 8개 읍·면 거주민들은 지리적 여건이나 지역발전을 위해 이 지역을 서산군에서 분리하여 태안군으로 신설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
2. 서산군은 행정구역이 3읍 16면에 인구 24만 2520명의 전국 제1의 웅군이며, 서산 A·B지구 대단위 간척사업 및 대산임해공단 조성 등으로 인구와 면적이 늘어나고 있으며, 광활한 군세로서 군정기능이 적정치 못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이 되지 않고 있음. 더우기 태안반도는 군청소재지로부터 30~40km의 원거리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민원 등 생활이 불편할 뿐 아니라 시간과 경비부담이 커 이 지역을 서산군에서 분리해야 할 실정임.
3. 면적이나 인구 면에서도 기존 타군에 비해 부족함이 없는 태안반도 8개 읍·면을 서산군에서 분리하여 태안군을 신설해 주기 바라는 청원임.

10월 2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안 수정에 관한 청원

(10월 2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125-1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이병도 외 722인으로부터 박경석 의원 윤길중 의원의 소개로 제출)

요지

1.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민족문화추진회 부설 국역연수원의 역할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될 것인바 고전국역계 및 국학계는 동 법안을 재고하여 수정해 주기를 바람.
2. 정부의 지원하에 설립된 민족문화추진회 부설 국역연수원은 1974년부터 지금까지 사료의 효과적인 조사, 수집, 보존과 정리, 편찬을 통한 국사연구의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역요원을 양성해 왔으나 국회에 제출된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동일목적의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게 될 예정인바 특수한 동일사업에 중복된 예산지원이 불가하므로 국역연수원은 폐쇄될 수밖에 없는 처지임.
3. 번역요원 양성은 기존 국역연수원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 법률안의 수정을 바라는 청원임.

10월 28일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

서산지구 간척공사로 인한 영세어민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10월 28일 충남 서산군 고북면 봉생리1구 140번지 엄동섭 외 593인으로부터 김현욱 의원의 소개로 제출)

요지

1. 충남 서산군 천수만의 어업권이 없는 영세어민들은 현대건설(주)의 간척사업 시행으로 말미암아 생활터전을 잃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줄 것을 바람.
2. 천수만은 천혜의 수산물 서식 산란처로서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영세어민들은 대대로 연안어업에 종사하며 살아왔으나 정부의 국토확장과 식량증산책의 일환으로 서산군 천수만 A·B지구 간척공사가 현대건설(주)에 의해 시행됨으로 인해 어민들은 생활터전을 일시에 잃게 되었음.

간척사업 시 선착공 후보상으로 보상대책이 시행되리라 믿었으나 양식장면허지와 허가선박에만 소액을 보상하였을 뿐 대다수 어업권이 없는 영세어민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음.

3. 서산지구 간척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어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를 바라는 청원임.

10월 29일 농수산위원회에 회부

당구에 대한 경기종목 지정에 관한 청원

(10월 29일 부산직할시 동구 범일동 830-40 김상석 외 16인으로부터 한석봉 의원의 소개로 제출)

요지

1. 지혜와 기술, 신체건강에 이상적인 실내운동인 당구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경기종목으로의 지정을 바랍.
2. 우리나라의 당구는 70여 년의 오랜 전통을 지닌 실내운동으로서 당구계에서는 건전한 당구부 구성과 당구인구 저변확대에 목적을 두고 각종 대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나 그동안 당구에 대한 그릇된 인식 때문에 오락으로 불리어 공중위생법에 위생접객업으로 규정된 관계로 경기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타 스포츠에 비하여 많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
3. 당구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당구를 공중위생법에서 제외하여 하루속히 경기종목으로 지정해 주기를 바라는 청원임.

10월 30일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

○청원 심사

보훈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1986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면목동 580-43 금성주택 5동 102호 조중행으로부터 심완구 의원의 소개로 제출)

순국선열에 대한 국가보상특별법 제정 청원

(198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릉1동 649-14 이종갑 외 6인으로부터 윤길중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

(1986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부이촌동 302-75 대한의학협회장 문태준으로부터 박성태 의원 김집 의원의 소개로 제출)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7월 1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인으로부터 이찬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간호보조원 명칭 개선에 관한 청원

(9월 2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363-1(부환빌딩 408호) 한국간호보조원협회장 이경자로부터 김중위 의원의 소개로 제출)

전몰군경유족 중 부모에 대한 부가연금 지급에

관한 청원

(9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5 대한전몰군경유족회 회장 은성의로부터 전종천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6건 10월 29일 보건사회위원장 박준병 보고)

이상 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통지

10월 29일 정부로부터 동 일자로 개정헌법을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음